

第 25 輯

ISSN 1738-2971

Police Science Journal

治安論叢

第二十五輯

治安政策研究所

발 간 사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종플루의 유행 등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치안수요에 신속한 치안정책의 제시와 적시에 이를 수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이는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치안서비스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치안정책연구소 또한 이러한 치안환경에 대응하여 공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치안정책을 연구·개발하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이제 '국가간 치안경쟁력 비교를 위한 표준지표 연구' 등 4편의 논문을 엄선하여 「치안논총」 제25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동안에도 「치안논총」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제25집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노력의 결실이 실무부서에 활용됨은 물론 치안정책 관련분야 연구에 일조하는 알찬 도우미가 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연구에 전념하여 훌륭한 논문을 완성하여 주신 연구진과 논총발간에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 9.

치안정책연구소장 김 김 씨

총 목 차

- ◆ 국가간 치안경쟁력 비교를 위한 표준지표 연구5

-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95

- ◆ 외국의 집회·시위 관리시 물리력 사용에 관한
규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199

- ◆ 노사분규시 외국의 경찰력 투입기준에 관한 연구335

국가간 치안경쟁력 비교를 위한 표준지표 연구



《 研究陣 》

연구위원 : 탁 종 연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치안논총 25집

국가간 치안경쟁력 비교를 위한 표준지표 연구

《研究陣》

연구위원 : 탁종연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목 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중요성	11
제2절 치안경쟁력 지표로서 각종 국가경쟁력 지표들의 문제점	12
제3절 연구의 목적	13
제4절 보고서의 구성	13
제2장 치안경쟁력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14
제1절 치안경쟁력의 의의	14
1. 국가경쟁력의 개념	14
2. 기업의 경쟁력과 경찰의 치안경쟁력의 차이점	16
3. 치안경쟁력의 의의	17
제2절 경찰업무수행 평가의 역사	17
제3절 경찰업무수행 평가연구	19
제4절 국내의 경찰업무수행 평가연구	24
제3장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에 의한 치안경쟁력 평가	26
제1절 현 황	26
제2절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연감	26
제3절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보고서	30
제4절 산업정책연구원(IPS)의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	32
제5절 국가경쟁력 지표 소결	34
제4장 공식범죄통계와 피해자조사	37
제1절 공식범죄통계	37
1. 현 황	37
2. 유엔 범죄 조사	38
3. 인터폴 범죄 조사	45

4. 요약	47
제2절 범죄피해조사	48
1. 범죄피해조사와 치안경쟁력 평가	48
2. 국제범죄피해조사(ICVS)	49
3. 국제범죄피해조사의 내용 및 활용방안	50
4. 국제범죄피해조사의 문제점	51
5. 요약	51
제5장 새로운 치안경쟁력 지표의 모형	53
제1절 개 설	53
제2절 치안경쟁력 평가영역 및 지표	53
제3절 가중치 부여 기법	55
1. 가중치 부여의 필요성	55
2. AHP 기법을 이용한 치안경쟁력 평가영역 가중치부여 방법	56
제4절 평가방식 : 측정의 세부사항	59
1. 범죄율	59
2. 범죄에 대한 두려움	62
3.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	63
4. 경찰력과 경찰권의 공정한 사용	64
5. 고객서비스	65
6. 경찰작용의 효율성	66
제6장 치안경쟁력 조사의 시행 및 발표	67
제1절 외교관조사	67
1. 모집단과 표본	67
2. 조사의 시행	68
제2절 연구실행기관	70
제3절 국제치안경쟁력보고서 발표계획	72
1. 세계 치안경쟁력 보고서	72
2. 연례 발표회	73

제7장 결론	75
제1절 연구의 요약	75
제2절 연구의 함의	76
참 고 문 헌	77
〈부록 1〉 IPS의 국가경쟁력 평가대상 국가의 명단	80
〈부록 2〉 제10차 유엔 범죄 조사 설문지(경찰부분)	81

표 목 차

〈표 1〉 David Bayley(1996: 47)가 제시한 경찰의 업무수행 측정지표들	20
〈표 2〉 Moore와 Braga(2003)가 제시한 경찰업무수행 평가영역	22
〈표 3〉 국내의 경찰업무수행 평가연구	24
〈표 4〉 IMD 세계경쟁력 지수구성	27
〈표 5〉 정부효율분야 사회적 여건 부문 상세지표	28
〈표 6〉 WEF 글로벌경쟁력 지수구성	30
〈표 7〉 IPS 국가경쟁력 평가지표	33
〈표 8〉 한국의 국가경쟁력 추이	34
〈표 9〉 유엔 범죄경향 및 형사사법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사의 통계정보 목록	40
〈표 10〉 유엔 범죄 조사에 대한 회원국의 응답률	44
〈표 11〉 유엔 범죄 조사에 대한 지역별 응답률 (2001-2002 조사)	45
〈표 12〉 인터폴 범죄 조사에 대한 응답률	46
〈표 13〉 새로운 치안경쟁력 평가영역 및 측정지표	54
〈표 14〉 치안경쟁력 평가영역의 쌍대비교를 위한 설문 예	57

그림 목 차

〈그림 1〉 한국의 국가경쟁력 추이	35
〈그림 2〉 새로운 치안경쟁력 평가 세부영역	5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중요성

경쟁력(competitiveness)은 21세기의 중요한 화두(agenda)라고 할 수 있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뿐 아니라 모든 개인과 기관이 따라야 할 새로운 윤리(new ethics)가 된 것이다. 이제 누구라도 경쟁에서 뒤처지면 패배의 쓰라림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는 국가의 경쟁력 실추가 어떤 재난을 초래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주었다.

경찰과 같이 치안활동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도 국내외 민간 및 공적 기관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당장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삶의 질을 하락시키며, 경찰에 대한 불신과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또한 이런 시민들의 불만족은 개인의 이주는 물론, 기업체의 이전 및 유치실패를 초래하는 등 지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치안서비스의 경쟁력은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 요소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 등도 치안서비스의 중요성을 간파하여, 국가경쟁력 지표 중의 일부로서 각종 치안관련 지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IMD의 경우, 정부 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의 지표로서, 법 집행의 공정성(Justice)과 신체와 재산에 대한 안전(Personal Security and Private Property)을 측정·발표하고 있으며, WEF의 경우, 국가 공적 기관(Public Institutions) 중 안전분야(Security)의 지표로서 테러로 인한 기업비용(Business Costs of Terrorism), 경찰서비스의 신뢰도(Reliability of Police Services), 범죄와 폭력으로 인한 기업비용(Business Costs of Crime and Violence), 조직범죄로 인한 비용(Organized Crime) 등을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제2절 치안경쟁력 지표로서 각종 국가경쟁력 지표들의 문제점

국가경쟁력 평가기관들의 보고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이 보고결과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치안관련 지표를 치안활동기관의 경쟁력 평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모두 표본추출이나 지표의 구성 등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들은 경제적 측면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치안활동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평가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한 국가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가를 묻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IMD의 경우,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연성자료, soft data)와 일반 통계(경성자료, hard data)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치안관련 지표는 모두 기업인들에 의한 설문조사에 근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WEF의 경우에도 설문조사와 각종 통계치를 종합하여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으나, 치안관련 지표는 모두 기업인에 대한 설문조사에 근거하고 있다. 물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경제적 위치 등으로 인해 일반인과 동떨어져 있는 기업인들만의 주관적 시각으로 치안활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들 기관의 지표는 치안활동의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치안활동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범죄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치안활동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쓰이는 범죄사건의 발생율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치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Walker & Katz, 2005; Skogan, 2004; Langworthy and Travis, 2002) 사용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각 평가기관들의 측정지표가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은 이를 실증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WEF의 지표에는 법 집행의 공정성이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안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반대로 IMD의 지표에는 테러로 인한 기업비용이나 경찰서비스의 신뢰도 등은 담겨있지 않다. 사실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수백 개 문항 중에 3-4개의 설문문항으로 국가의 치안활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국민과 국가에 기여하는 경찰을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치안경쟁력지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제3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1) 국가간 치안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가칭 치안경쟁력 지표(Security Competitiveness Index, SCI)를 개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치안활동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통계치와 주관적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종합지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2) 개발된 지표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매년 가칭 '세계 치안경쟁력보고서' (World Security Competitiveness Reports)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평가방식, 평가기관의 선정 및 발표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각국의 치안행정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의 계획 등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4절 보고서의 구성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경찰기관에 대한 비교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기존에 국가간 치안경쟁력 지표로 사용되어온 경제연구소들의 지표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이후, 국가간 치안경쟁력 지표로 사용가능성이 있는 공식범죄통계자료와 국제피해자조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들의 치안경쟁력 지표로서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치안경쟁력 지표의 내용, 조사방법, 그리고 발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2장 치안경쟁력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제1절 치안경쟁력의 의의

1. 국가경쟁력의 개념

국가간 치안경쟁력 비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안경쟁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편 타당한 개념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확한 개념의 정의는 정확한 측정의 필수 선행조건으로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측정방법과 지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Babbie, 2001).

치안경쟁력을 정의하기에 앞서 국가경쟁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경쟁력을 측정하고 발표하는 IMD나 WEF같은 기관들은 치안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일부로 보고 있으므로, 후자에 대한 검토는 전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위 기관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개념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가경쟁력 또는 기업경쟁력과 구별되는 치안경쟁력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IMD는 국가경쟁력을 “영토 내에서 활동중인 기업들에게 국내적,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제고해주는 국가능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WEF는 국가경쟁력을 “높은 수준의 일인당 GDP 성장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중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지해주는 제도와 경제정책의 세트”라 정의하고 있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6). 현재 이러한 국가경쟁력 개념을 둘러싸고 크게 두 가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고, 두 번째는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첫 번째 논쟁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경쟁력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1980년대 경영 전략이론에서 M. Porter 교수(미 하버드대)의 연구결과를 모태로 출발하였다. 1990년대 이후 신경제 현상 속에서 미국, 일본 등 국가들간에 경쟁력 역전이 나타나고 여타 국

가들 간에도 거시경제성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이 전개되면서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는바(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6), 국가경쟁력 개념에 대한 옹호론자인 Porter 교수는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차원의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정의하고 비교하는 시도의 본질이라고 주장하였다(Porter, 1990, 한국전산원, 2005에서 재인용). 한편, P. Krugman 교수(미 프린스턴대)는 국가경쟁력 개념의 허구성을 강력히 비난하였는데, 국가는 기업과는 전혀 달라 단 하나의 수치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을 표현할 수 없으므로 경쟁력 개념을 국가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국가경쟁력 개념은 매혹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복잡한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는 집착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하였다(Krugman, 1994, 한국전산원, 2005에서 재인용).

또한, 앞서 제시된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정의는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6)는 국가경쟁력을 “한 국가가 국민 통합과 지속 가능한 선진화의 기틀을 갖추는 종합적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국가의 경쟁력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과 단계에 필요한 국가의 기능, 국가의 능력, 사회적 통합 정도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기업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한 구성 요소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직접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의 주요 부분으로 설정하되, 국민생활의 질을 표상하는 제반 사회적 지표들과 상호 작용하는 요소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이 현실에서 널리 쓰이고 그 결과에 이미 익숙해진 상황에서 개념자체의 실효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논란 즉 국가경쟁력의 구체적 지표가 경제적 측면을 뛰어넘어 국민생활을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측면을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은 치안경쟁력을 정의하고 지표를 구성하는데에서도 경청해야 할 타당한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기업의 경쟁력과 경찰의 치안경쟁력의 차이점

경찰의 치안경쟁력을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경쟁력 (competitiveness)이란 용어가 주로 사용되는 사적 영역 특히 기업의 경우와, 대표적인 공적 영역에 속하는 경찰의 경우가 어떻게 다른 지를 논할 필요가 있다. 사적 영역에서의 업무평가는 경제적인 이득 (financial bottom line)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익 창출을 위한 행위들이 투자자에 의해 평가 받는다(Moore and Braga, 2004). 경제적인 이익창출은 가장 중대한 활동이며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부수적인 활동은 예컨대 사회공헌이나 일자리 창출 등은 이익창출에 저해되면 무시되고, 이에 대해 기업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즉, 기업의 평가는 철저히 얼마나 경제적인 성과를 거뒀는지에 집중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활동에 있어서는 경제적 이익과 같이 명료한 지고지선의 가치를 인정받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종래 경찰의 최고 가치로 종종 평가 받던 범죄통제(crime control)도 다른 가치, 예를 들어 공정한 법 집행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제대로 된 경찰활동이라고 평가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 대한 표적수사는 효과적인 경찰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몇 달간 지속되는 불법집회를 겪은 사람 중에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경찰의 업무평가는 무엇이 더 중요한 지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 철학적 작업인 것이다.

경찰에 대한 업무평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기업과 달리 경찰에게는 누가 가장 큰 고객이며 누구에 의해 평가 받아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Moore and Braga, 2004). 경찰의 주 고객은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일 수도 있고, 경찰에게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국민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응급구조나 범죄피해를 입고 고소를 하는, 즉 직접적인 서비스를 요청하는 개별적인 사람들, 그리고 경찰의 수사활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들 모두는 각자의 몫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판단기준에 의해 경찰을 평가할 것이다.

이런 면들을 고려할 때 경찰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비교는 결론이 나와있는 기업의 경쟁력평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학적이고 복잡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교한 것이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3. 치안경쟁력의 의의

치안경쟁력이란 용어는 경제학적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간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굳이 치안경쟁력을 정의하자면, “한 국가의 경찰이 범죄통제와 질서유지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능력”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찰이 해야 할 주요 임무인 범죄통제와 질서유지를 다른 나라 경찰보다 훌륭히 수행하여 국민들과 다른 집단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정의하면 사실 치안경쟁력이란 용어는 경찰학에서 정의하는 경찰의 효과성(effectiveness) 또는 업무수행(performance)과 거의 같은 개념이 된다. 이 두 개념 모두 한 경찰기관이 다른 경찰기관에 비해 얼마나 더 업무수행을 잘 하는가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see. Kelling, 1996; Mastrofski, 1996; Bayley, 1996; Moore and Braga, 2004). 따라서 이하에서는 선행연구와 같이 치안경쟁력이란 용어와 경찰의 업무수행 및 효과성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제2절 경찰업무수행 평가의 역사

근대 경찰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로버트 필경(Sir. Robert Peel)은 범죄와 무질서의 부재가 경찰의 효과성의 증거라는 말을 남겼지만, 효과성의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경찰의 업무수행에 대한 제대로 된 비교평가는 1930년대 미국의 경찰개혁가였던 Vollmer 서장, Hoover FBI 국장, 위커삼위원회(Wickersham Commission)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Mastrofski, 1996; Kelling, 1996). 이들 초기 경찰개혁가들은 경찰의 범죄통제(crime control)가 업무수행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고, 표준범죄보고(Uniform Crime Reports)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공식범죄통계, 즉 체포, 범죄발생건수 및 검거율을 미국 전역의 경찰의 업무수행 평가지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들 경찰지도자들이 범죄통계를 사용한 것은 외부적으로는 당시 경찰의 업무평가가 부패한 정치가에 의해 좌우되던 것을 막고 일반 대중들로부터 직접 평가 받기 위한 조치였으며, 경찰 내부적으로는 관리가 힘들었던 일

선 경찰관들을 업무평가라는 새 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였다(Kelling, 1996:26-27). 공식범죄통계의 의한 범죄통제 활동평가는 경찰역사에서 처음으로 동일한 평가기준과 보고양식을 채용함으로써 전국의 경찰기관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표준화된 공식 범죄통계를 통해 경찰의 범죄통제활동을 비교평가하고 있으며, 사실상 이것을 경찰 업무 수행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

경찰학이 학문적으로 성숙함에 따라, 범죄통제가 경찰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도 틀림없지만, 그것도 경찰이 달성해야 할 많은 가치 중 하나 일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Bayley, 1996 Kelling, 1996). 경찰이 이루어야 할 성과에는 범죄통제 외에도 질서유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를 통한 삶의 질 제고, 공정한 법 집행 등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Mastrofski, 1996; Bayley, 1996). 또한 그간 범죄통제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공식범죄통계가 몇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특히, 많은 범죄가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경찰의 통계수집 방식과 정책도 통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경찰이 집계한 통계에만 기반한 그간의 경찰업무 평가방식이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경찰 업무수행 영역에 대한 재인식은 필연적으로 수행평가방법에 대한 변혁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범죄피해조사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조사(Pate and Skogan, 1985), 공공장소에서의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 조사(Skogan, 1990), 경찰서비스에 대한 반복적 전화를 통한 분석(Sherman, Gartin and Buerger, 1989)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중 활발히 사용된 것은 범죄피해조사와 그와 종종 동반되어 수행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조사였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국민들이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 서비스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덜 당하는 지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며, 시민들이 그를 통해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는지를 재는 것이므로 경찰 업무수행 평가를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로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조사는 모두 시민들의 주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업무평가로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예: Mastrofski, 1996: 210). 사실 성별이나 나이대별로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와 범죄피해의 위험도는 정

반대인 경우도 보고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는 매우 주관적이다. 촛불시위가 특정그룹에게는 자유의 표현일 수 있고, 다른 그룹에게는 무질서와 불법으로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평가를 순전히 주관적 평가에만 의존한다면 경찰의 객관적 활동이나 구체적 경험보다는 평가자 들의 기대치와 선입관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경찰업무수행 평가연구

경찰의 업무수행평가를 단지 범죄통제에 대한 공식범죄통계나 범죄피해조사 결과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공감을 얻고 있다(Bayley, 1996; Mastrofski, 1996; Moore and Braga, 2004). 경찰이 수행하는 가치와 목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측정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찰활동은 범죄통제 말고도, 공정성 또는 정의(justice), 성실(integrity), 두려움 감소(fear reduction), 시민만족(citizen satisfaction), 시민에 대한 보호와 도움¹⁾(protection and help), 효율성(efficiency), 그리고 현명한 무력사용(wise use of force) 등 많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Kelling, 1996: 32-33). 따라서 George Kelling 등과 같은 경찰학자들은 경찰의 업무수행 (performance)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지표(multiple indicators)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 경찰학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David Bayley(1996)도 경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이제까지 경찰의 효과성은 범죄통제라는 너무 작은 요소에만 초점을 둔 것이 문제였으며, 경찰의 효과성 측정은 경찰이 실제로 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Bayley, 1996: 50). 그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경찰의 업무수행 (police performance)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도록 추천되는 지표들을 정리하여 소개하면서, 이들 평가지표를 직접지표

1) Mastrofski (1996)은 경찰이 시민들을 처우하는 방식이 경찰업무 평가요소 중 가장 중요한 측면임에도 종종 소홀이 다루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경찰의 생각과 행동자체가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범죄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와 간접지표 그리고 객관지표와 주관지표 등 4가지로 분류했다(〈표 1〉 참조).

〈표 1〉 David Bayley(1996: 47)가 제시한 경찰의 업무수행 측정지표들

	직접 지표	간접지표
객관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율, 범죄피해 · 부동산가치 · 대중의 공공장소 이용 · 상업활동 · 통제된 무질서 상황 수 · 해결된 지역사회문제 수 · 경찰행동에 대해 제기된 불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의 수 · 순찰 경찰관수 · 행정가대 경찰관의 비율 · 전화신고에 대한 반응시간 · 체포 · 검거율 · 지역 범죄예상 회의 회수 · 지역사회 감시 미팅 회수 · 전화응대 속도 ·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후 연락 회수 · 압수한 마약가치 · 감사팀의 힘 · 문제지역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 · 가치에 대한 언명 · 채용의 다양성
주관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에 대한 두려움 · 경찰에 대한 대중의 확신 · 이웃에 대한 사람들의 헌신 ·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 · 경찰서비스에 대한 불만 · 경찰을 도우려는 의지 · 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 · 경찰관의 자부심 · 공공의 명성에 대한 경찰의 인식 · 지역사회에 대한 경찰의 지식

직접지표(direct indicators)란 범죄율이나 공공질서와 같이 경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접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 측정한 것이고, 간접지표(indirect indicators)란 경찰이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한 활동상을 평가하는 지표이다²⁾(Bayley, 1996:46-48).

2) 이러한 개념은 종래 경찰의 업무수행 평가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던 결과 (outcome)와 산출 (output)이란 개념과 거의 동일하다 (Bayley, 1996). 미국 경찰용어로 결과 (outcome)란 경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제로 성취한 가치를 일컫는다. 즉, 감소된 범죄나 무질서가 그러한 것이다. 산출(output)은 그러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경찰권위와 재정자원을 사용하여 수행한 활동 예컨대, 체포건수 등을 말한다.

간접지표에는 체포, 검거율, 경찰관수, 경찰관의 사기 등 경찰의 활동자체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는데, 이런 지표들은 경찰이 제대로 활동한다면 결국 경찰의 궁극적인 목적도 성취될 수 있을 것이란 가정하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직접지표만이 경찰이 효과적인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간접지표보다 더 나은 지표이며, 따라서 간접지표만을 단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직접지표와 간접지표를 다시 객관지표 (hard indicators)와 주관지표 (soft indicators)로 세분하였다. 객관지표는 객관적 사실을 측정한 지표이고, 주관지표는 경찰이나 시민들의 인식을 측정한 것이다. Bayley는 주관지표가 객관지표가 측정할 수 없는 분야인 두려움, 사기와 같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측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보완지표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찰업무수행 평가영역을 세분화하여 보면, 경찰의 업무영역에 조망을 쉽게 할 수 있고, 각 지표들의 장단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Bayley교수의 지표 4가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객관지표(Direct Hard Indicators)에 속하는 것으로는 범죄율과 범죄피해, 대중의 공공장소 이용, 상업 활동 등이 있다. 특히 범죄율은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직접객관지표이다. 직접주관지표(Direct Soft Indicators)에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 대중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경찰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 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직접지표들이 경찰이 직접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다.

간접객관지표 (Indirect Hard Indicators)에는 체포, 검거율, 경찰관의 수, 순찰 경찰관 수, 전화응대 속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표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지만, 경찰이 직접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가치자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라 이를 위해 경찰이 활동한 바를 측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접주관지표 (Indirect Soft Indicators)에는 경찰의 사기, 자부심,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간접지표들은 경찰의 활동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활동이 잘 이뤄질 경우, 예를 들어 경찰관의 사기가 높아지고, 검거율이 높아지면, 경찰의 목적인 범죄통제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Mark Moore와 Anthony Braga(2003: 2004)도 경찰업무수행영역이 다양하

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측정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측정해야 할 경찰 업무수행 영역(dimensions of police performance)을 크게 7가지로 분류하였다 (표2 참조). 여기에는 범죄와 범죄피해 감소, 범죄자에게 책임추궁, 두려움감소 및 개인적 안전감 증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확보, 재정자원의 공정한, 효율적, 효과적인 사용, 경찰력과 경찰권의 공정한, 효율적, 효과적 사용, 그리고 고객의 만족과 합법성 획득 등이 포함된다.

〈표 2〉 Moore와 Braga(2003)가 제시한 경찰업무수행 평가영역³⁾

대 영역*	세부 영역
안전과 보안증진	범죄와 범죄피해 감소(Reduce Crime and criminal victimization)
	두려움 감소 및 안전감 증진 (Reduced Fear/Enhance Security)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 (Guarantee safety in public spaces): 교통안전, 경비대책
	재정적 자원의 공정한 효율적, 효과적인 사용 (Use financial resources fairly, efficiently, and effectively): 재정적 성실, 재정책임, 생산성 향상, 공정한 고용기회, 공정한 계약
진정한 공정한 법집행	범죄자에 대한 책임추궁 (Holding offenders to account): 범죄해결, 범인체포
	경찰력과 경찰권의 공정한, 효율적, 효과적 사용 (Use force and authority fairly, efficiently, and effectively): 부패감소, 지나친 공권력 사용감소, 적정절차 준수 등
고객 서비스	고객의 만족과 합법성 획득 (Satisfy customer demands/Achieve legitimacy with those policed): 신고자 만족, 피단속자로부터 합법성 인정

그들이 가장 먼저 선정한 영역은, 많은 학자들에게 경찰업무평가 영역 중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받는 범죄와 범죄피해 감소(reduce crime or criminal victimization)이다. 이는 결국 범죄통제를 일컫는 다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 감소야 말로 경찰이 사회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일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3) Moore와 Braga교수는 다른 논문에서 안전과 보안증진, 그리고 고객서비스를 도구적 가치라고 불렀고, 진정, 공정한 법집행 그리고 공평한 처우에 대한 느낌을 원칙적 가치라고 부르고 이 두 가치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다. 주의할 점은 경찰에 신고된 범죄 외에도 신고되지 않는 범죄의 감소도 중요한 평가영역이라는 점이다. 둘째, 범죄자에 대한 책임추궁(call offenders to account)은 범죄를 해결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범죄감소와 독립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된다.

셋째, 두려움 감소와 개인적 안전감 증진(reduce fear and enhance personal security)은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 국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두려움과 자기방어 행동의 수준 및 종류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넷째,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guarantee safety in public spaces)는 공공 공간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공공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교통상의 안전, 주차단속, 그리고 공원, 학교, 대중교통에서의 안전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한국경찰로 보면 교통기능에 대한 평가와 생활안전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적 활동을 위한 공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데모와 행진에 대한 공정한 대응, 그리고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 주로 경비경찰 활동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다섯 번째로, 재정적 자원의 공정한, 효율적, 효과적인 사용(use financial resources fairly, efficiently, and effectively)이 평가요소가 된다. 재정적 성실, 재정의 신뢰도, 생산성, 고용기회평등 및 공정한 계약 등이 포함된다. 여섯 번째로, 경찰력과 경찰권의 공정한, 효율적, 효과적 사용(use force and authority fairly, efficiently, and effectively)은 경찰이 얼마나 공정한 국가기관인가에 대한 평가요소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서비스와 보호의 공정한 배분, 공정하고 평등한 정책, 부패통제, 과도한 공권력사용의 억제와 일상적인 폭력과 권위사용의 감소, 그리고 인식된 합법성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만족과 합법성 획득(satisfy customer demands/achieve legitimacy with those policed)은 경찰을 요청한 시민, 조직된 청원자들을 만족시키거나 그리고 경찰의 단속을 받은 시민들로부터 공권력사용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받는 것을 요소로 한다.

주목할 점은 Moore와 Braga (2003)가 예시한 평가영역은 Kelling (1996)이 언급한 요소들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즉 경찰학 분야 권위자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으나 거의 대부분 어떤 분야가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략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제4절 국내의 경찰업무수행 평가연구

국내에서도 우리 경찰의 업무수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이 1970년대부터 행해져 왔다(〈표 3〉 참조). 용어의 사용은 다양하지만 각 연구들은 경찰의 업무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2004년도 경찰백서를 보면 경찰청에서도 조직, 인력, 예산, 장비, 입법활동, 정보통신, 사이버경찰청, 싱크탱크 치안연구소 등으로 범주를 구분하여 매년 경찰역량을 측정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국내의 경찰업무수행 평가연구4)

자료명	경찰역량의 정의	경찰역량 결정변수(혹은 지표)
70년대 한국경찰의 발전방향 ⁵⁾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경찰력	인력(경찰관 수), 기동력(보유차량 대수), 능력(범죄검거율)
치안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 ⁶⁾	각종 범죄나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경찰능력	경찰정원, 경찰소유차량수(기동력), 범죄검거율, 경찰예산액, 경찰서 수, 자·파출소 수
치안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⁷⁾	인력, 장비 등 치안자원을 투입하여 사회적 안전 및 안정확보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경찰능력	경찰관 수, 경찰예산, 경찰활동, 주민자율방범단체 수
2004 경찰백서 ⁸⁾	정의 없음	경찰조직, 경찰인력, 경찰예산, 경찰장비, 입법활동, 정보통신, 사이버경찰청, 싱크탱크 치안연구소

4) 이 표는 조병인 박사의 논문(2005: 9)에 있는 표를 각색한 것임.

5) 내무부, 「70년대 한국경찰의 발전방향」, 1972년 10월, 35-41쪽.

6) 경찰대학, 「치안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 『치안논총』 제 4집, 1987, 335-377쪽.

7) 치안연구소, 「치안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2000년 5월.

8) 경찰청, 「경찰백서 2004」, 2004년 4월, 437-458쪽.

하지만 국내에서 행해진 연구들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력, 예산, 장비 등 대부분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치안역량을 측정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Bayley교수의 분류체계를 빌자면, 주관지표보다는 객관지표를, 직접지표보다는 간접지표를 치중한 것으로 보이며, 중요한 지표들이 상당히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연구에서와 같이 경찰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명확히 하고, 정립된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측정 영역을 체계적으로 정의·구분한 다음, 적절한 지표를 개발하는 단계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장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에 의한 치안경쟁력 평가

제1절 현황

국가경쟁력을 평가·공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나 국제 경영 개발원(IMD) 등도 치안서비스의 경제적 중요성을 간파하여, 국가경쟁력 지표 중의 일부로서 각종 치안관련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전체적인 국가경쟁력 평가에는 상당한 공신력이 부여되어 있지만, 이들 기관의 연구결과 모두가 타당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치안관련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기 어려운 결과⁹⁾가 나타나기도 하고, 표본설정과 지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유명한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으로 알려져 있는 WEF, IMD, 그리고 IPS 등 세 기구의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알아보고, 이들 조사의 문제점, 특히 치안관련 지표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2절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연감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or IMD)은 스위스 로잔에 있는 경영자 교육기관으로서, 1989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경쟁력연감(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발표하고 있다. IMD의 조사는 2008년 현재 55개국 및 지역경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

9) 예를 들어, 최근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평균 20-30위선인데 치안경쟁력은 그보다 훨씬 낮은 50위선(WEF, 2007) 이라고 나타난 것은 상당히 의아하다는 반응이 있다. 이는 외국과 비교해 한국은 밤에 여자들이 혼자 외출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곳이라는 평가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는 특히 이해하기 힘든 결과인 것이다.

시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권위 있는 국가경쟁력 평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표 4〉와 같이 IMD는 각국의 종합적인 경쟁력 평가를 위해 평가영역을 경제운영성과 (Economic Performance), 정부효율(Government Efficiency), 기업효율(Business Efficiency), 발전인프라(Infrastructure) 등 4개 분야로 크게 나누고, 이를 5개의 부문으로 세분화해 평가하고 있다(한국전산원, 2005). 또한 각 세부영역도 총 331개에 이르는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등 조사의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4〉 IMD 세계경쟁력 지수구성

경제운영성과	정부효율	기업효율	발전인프라
국내경제	공공재정	생산성·효율성	기본인프라
국제무역	재정정책	노동시장	기술인프라
국제투자	제도적 여건	금융	과학인프라
고용	기업관련법	경영활동	보건·확충
물가	사회적 여건*	형태·가치	교육

* 치안경쟁력 분야 포함되어 있음.

국제 경쟁력 평가영역 중, 경제운영성과는 국내경제에 대한 거시경제학적 평가이고, 정부효율분야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이며, 기업효율분야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혁신적이고, 사업적이며 사회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인프라분야는 어느 정도 기술자원, 과학 자원과 인력 자원들이 기업 활동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평가이다(한국전산원, 2005).

이 가운데 각국의 치안과 관련된 지표는 정부효율분야의 사회적 여건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바, 사회적 여건을 측정하는 11개의 지표 가운데 법 집행의 공정성(Justice)과 신체와 재산에 대한 안전성(Personal security & private property)을 측정하는 두 지표가 치안활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표의 측정은 설문조사 자료에 기초에 이뤄진다. 즉, 법 집행의 공정성은 “사법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설문문항으로, 신체와 재산에 대한 안전성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과 재산의 안전이 충분히 보호된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표 5〉는 사회적 여건(Societal

Framework)을 측정하는 11개의 지표와 각 지표의 구체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IMD는 총 331개에 달하는 상세지표들을 측정하기 위해 각국의 파트너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통계자료(hard data, 한국은 산업연구원이 제공)와 설문조사자료(survey, 한국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제공)를 이용한다. 측정자료에는 통계자료가 전체자료의 2/3를 차지하고 설문조사자료가 1/3을 차지하는데, 설문조사는 약 4,000여명에 이르는 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통계자료와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상세지표들의 국가별 순위를 산출하고, 20개 부문별로 해당 상세지표들을 표준화하여 합산함으로써 국가별 순위를 산출한다. 또한 부문별 점수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4대 분야별 및 종합 국가 순위를 산출한다(한국전산원, 2005).

〈표 5〉 정부효율분야 사회적 여건 부문 상세지표

Societal Framework	
01. Justice	Justice is fairly administered.
02. Personal security & private property	Personal security & private property are adequately protected.
03. Ageing of society	Ageing of society is not a burden for economic development.
04. Risk of political instability	The risk of political instability is very low.
05. Social cohesion	Social cohesion is a priority for the government.
06. Income distribution -lowest 20%	Percentage of household incomes going to lowest 20% of households
07. Income distribution - highest 20%	Percentage of household incomes going to highest 20% of households
08. Equal opportunity	Equal opportunity legislation in your country encourages economic development.
09. Females in parliament	Percentage of total seats in Parliament
10. Female positions	Percentage of total legislators, senior officials and managers
11. Gender income ratio	Ratio of estimated female to male earned income globally

출처: IMD 홈페이지 (<http://www.imd.ch/research/publications/wcy/index.cfm>)

IMD의 조사방법은 정치한 이론과 광범위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어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IMD 보고서는 상당부분을 기업경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답변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없고, 답변자들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경제전망에 치중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특히 개발도상국 등 정치변화에 따라 경제환경이 크게 변하는 나라에서는 답변자들의 평가가 변화가 심한 경향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평가의 변화가 심하고 실제보다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다(경제정책비서관실, 2007). 예를 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항목에서 100여명의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지난해 5.11점을 부여하여 41위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07점을 부여하여 2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교체가 답변자들의 평가에 극심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한겨레신문, 2008. 05. 15). 두 가지의 치안관련 지표들 역시 설문조사자료에 근거하는 관계로 이와 같은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겠다.

두 번째 문제는 가중치 부여에 있다. IMD는 통계자료에 의한 지표와 설문조사자료에 의한 지표 모두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이 때문에 변화가 심한 주관적 평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객관적 평가를 압도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수출 50% 증가보다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 정도를 묻는 설문의 점수를 55% 높이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세 번째 문제점은 국가규모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WEF의 경우 국가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통계자료는 일단 GDP로 나누어서 그 비중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IMD는 이를 통제하지 않아 국가규모가 큰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실제 중국의 경우 많은 인구수로 인해 높은 점수를 받는 항목이 일부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이상의 문제점들은 각국의 치안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로서 본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높은 치안경쟁력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제3절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보고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or WEF)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관으로 1979년¹⁰⁾ 이후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해서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를 포함하는 글로벌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글로벌경쟁력보고서는 2007년 현재 131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본요인(Basic Requirements), 효율성 증진(Efficiency Enhancers), 기업혁신 및 성숙도 (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등 3대 부문(subindex)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은 <표 6>과 같이 12개 세부부문(pillar)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2007).

WEF는 3대 분야를 기준으로 국가의 발전단계를 평가하고 있는데, 먼저 요소주도형 단계(factor-driven stage)에서는 기업들이 요소들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가격경쟁을 하며, 인도, 중국, 우크라이나 등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 이하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효율주도형 단계(efficiency-driven stage)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생산에 주력하며, 폴란드, 브라질, 멕시코 등 1인당 국민소득 3,000~9,000달러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발전 단계는 혁신주도형 단계 (innovation-driven stage)로서 세련된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로, 핀란드, 독일, 일본 등 1인당 국민소득 17,000달러 이상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조현승·김대욱, 2005). 우리나라는 2007년도 평가에서 전년에 비해 12단계 상승한 11위를 차지하였고, 선진국 모델인 혁신주도형 단계로 완전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¹¹⁾(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2007).

<표 6> WEF 글로벌경쟁력 지수구성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제도적요인	효율성	거시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 시장 효율성	노동 시장 효율성	금융 시장 성숙도	과학기술 수준	시장 규모	기업 활동 성숙도	기업 혁신

10) 1995년까지는 IMD와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나, 1996년부터 독자적으로 발표해오고 있다.

11) 2006년도에는 2-3단계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치안과 관련된 지수는 기본요인 부문의 첫 번째 세부부문인 제도적요인 중 안전(security)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테러로 인한 기업비용(Business Costs of Terrorism), 경찰서비스의 신뢰도(Reliability of Police Services), 범죄와 폭력으로 인한 기업비용(Business Costs of Crime and Violence), 조직범죄(Organized Crime) 등 네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2007년도 경쟁력이 전년도 대비 12단계 상승한 11위로서 대부분의 지표가 상승하였으나 안전 부문은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아 상대적 약점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테러로 인한 기업비용이 78위, 조직범죄가 50위, 범죄와 폭력으로 인한 기업비용이 40위, 경찰서비스의 신뢰도가 27위로 평가되는 등 치안 관련 네 가지 지표 모두가 상대적 약점 요인으로 보고되었다(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2007).

IMD와 마찬가지로 WEF도 통계자료와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총 113개 상세지표에 대해 평가를 한다. 이 가운데 24개 항목은 통계자료, 79개 항목은 설문조사자료(한국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경영연구원이 제공)가 이용되는데, 설문조사는 약 11,000여명에 이르는 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2007). IMD와 비교하여 WEF의 평가가 설문조사자료 비중이 훨씬 높지만 설문조사 항목의 가중치를 낮게 설정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IMD는 경영대학원으로서의 기관의 성격을 반영하여 지나치게 기업입장에서 분석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WEF의 평가는 경제성장론의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다소 관점이 다르며, WEF에는 국가경쟁력 이론의 대가인 미 하버드대의 Porter 교수와 J. Sachs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어 더욱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하지만, 여전히 설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07년도 경쟁력이 급상승한 이유를 한미 FTA에 대한 기업인들의 기대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견해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하겠다.

앞서 설명한 치안관련 지표들 역시 설문조사자료에 근거하므로 결과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한 치안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업인들의 인식이 좋지 못해 지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범죄와 폭력으로 인한 기업비용은 폭력적인 노조의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짐작할 수 있지만, 테러로 인한 기업비용과 조직범죄에 대한 낮은 평가는 이해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역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치안경쟁력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제4절 산업정책연구원(IPS)의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¹²⁾

한국의 산업정책연구원(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or IPS)은 세계경쟁력연감이나 글로벌경쟁력보고서와 같이 해외에서 연구·발표되고 있는 국가별 경쟁력 평가 보고들이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고 연구방법이 부적절하며 선진국 위주의 관점에 치우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IPS는 2001년도부터 국가경쟁력연구원(NaC)과 공동으로 Porter 교수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근간으로 한 9-팩터 모델을 발전시킨 이중더블다이아몬드(Dual Double Diamond, DDD) 모델을 기반으로 66개국의 경쟁력을 물적·인적 요소를 종합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도에 23위를 기록해 전년도 대비 한 단계 하락하였다.

IPS의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는 한 국가의 경쟁력 구성요소를 9개 부문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23개 하위부문을 나눈 다음 총 275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한다. <표 7>은 9개 주요부문과 23개 하위부문을 보여주고 있는데, 치안 관련 지표는 관련 및 지원산업 부문의 생활환경 부문을 구성하는 10개의 지표들 가운데 신변안전(Personal Security)과 사회안전프로그램(Social Security Program) 등 두 가지가 있다.¹³⁾ 우리나라의 2007년도 종합 순위가 23위로서 전년도 대비 1단계 하락한 것에 비해 생활환경 부문은 전년도 대비 9단계나 하락한 37위를 기록하여 치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12) IPS의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IPS 홈페이지(<http://www.ips.or.kr/>)를 참고하였음.

13) 기타 생활환경 지표에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생활비(Cost-of-Living), 신 하이테크 산업(New High-Technology Industries),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삶의 질(Quality of Life), 세계화(Globalization), 국가 문화(National Culture), 혁신과 창의성(Innovativeness & Creativity) 등이 있다.

만족도가 크게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표 7〉 IPS 국가경쟁력 평가지표

물적요소	생산요소조건	에너지 자원
		기타 천연자원
	시장수요조건	시장의 크기
		시장의 질
	관련 및 지원산업	교통·물류
		통신
		금융 및 주식시장
		교육
		과학기술
		클러스터 발전
		생활환경
	경영여건	전략 및 구조
		글로벌 마인드
		기업문화
해외투자		
인적요소	근로자	양적 규모
		질적 경쟁력
	정치가 및 행정관료	정치가
		행정가
	기업가	개인 역량
		사회 기반
	전문가	개인 역량
		사회 기반
기타	기획요인	

IPS도 역시 통계자료와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표를 평가하는데, 137개 지표는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UN 등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138개 지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105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실시되는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특히 설문조사에 있어 평가대상도시의 일관성 있는 조사를 통해 설문자료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치

안 관련 지표가 모두 설문에 의존하고 있고 그 대상 역시 기업인들 위주여서 IMD와 WEF가 가지는 문제점과 유사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제5절 국가경쟁력 지표 소결

이상 대표적인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IMD, WEF, IPS의 국가경쟁력 개념정의 및 측정방법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2001년도 이후 이들에 의해 평가된 한국의 국가경쟁력 변화추이를 종합해보면 <표 8>, <그림 1>과 같다. 각 평가기관별로 조사대상국의 수와 조사내용이 다르므로 등위의 의미가 약간씩 다르나 대략 10위에서 30위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치안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37위(IPS, 2007), 27위에서 50위¹⁴⁾(WEF, 2007) 등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결과는 한국의 치안경쟁력이 정말로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아서 일수도 있지만, 연구방법상 문제 때문에 실제보다 저평가된 결과일 수도 있다.

<표 8> 한국의 국가경쟁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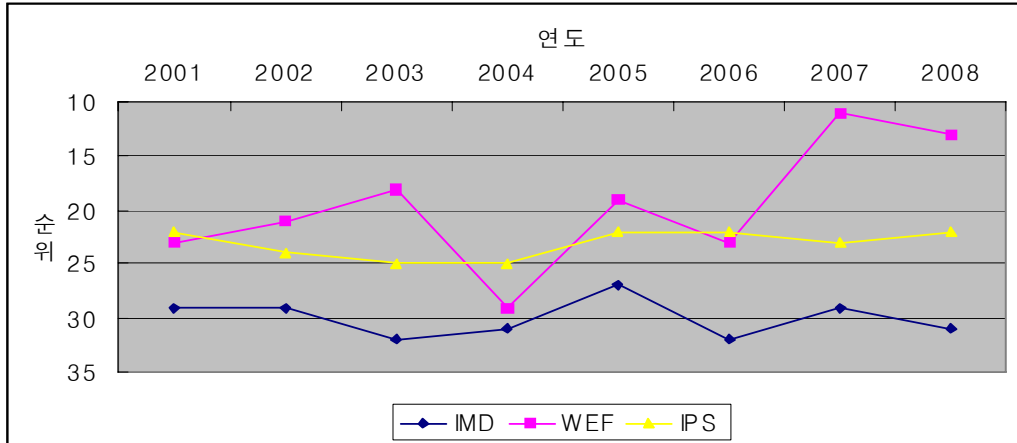
평가기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IMD ¹⁵⁾ (조사국 수)	29 (61)	29 (61)	32 (55)	31 (55)	27 (55)	32 (55)	29 (55)	31 (55)
WEF ¹⁶⁾ (조사국 수)	23 (75)	21 (80)	18 (102)	29 (104)	19 (117)	23 (125)	11 (131)	13 (134)
IPS ¹⁷⁾ (조사국 수)	22 (66)	24 (66)	25 (66)	25 (66)	22 (66)	22 (66)	23 (66)	22 (65)

14) WEF의 치안관련 4배 부분의 순위는 경찰서비스 신뢰도 27위, 범죄와 폭력으로 인한 기업비용 40위, 조직범죄 50위, 테러로 인한 기업비용 78위이다. 테러의 경우, 국가정보원을 주 담당기관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경찰의 치안경쟁력 지표로는 다소 부적절하다.

15) 2001, 2002년도는 61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이고 2003년도 이후 결과는 IMD가 2006년에 조사국을 55개국으로 조정하면서 조정된 결과이다(경제정책비서관실, 2007). 2008년도 조사에서는 전년도보다 2단계 하락한 31위를 차지했다(아시아경제, 2008. 5. 15).

16) 134개국을 대상으로 한 2008년도 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2단계 하락한 13위를 기록했다(한국경

〈그림 1〉 한국의 국가경쟁력 추이



위에서 이들 국가경쟁력 평가기관들의 지표들이 한 나라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지만,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특히 치안경쟁력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사용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안과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기업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자료에 근거하여 평가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조사 (Crime Victim Survey)가 경찰관서의 공식 범죄통계자료에 비해 실제 범죄 현상을 더 잘 반영한다고 여겨지지만 설문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경영인인데 문제점이 있다. 즉,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져 기업인들의 평가를 전 국민의 평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위와 유사한 문제이지만, 기업경영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들의 치안상황에 대한 편의(bias)가 평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선진국이 아닌 경우 국가권력의 부패가 심하고 따라서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도 커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 단기간에 급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으로 평가 받을 만 하지만 각종 제도를 포함한 정부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인들뿐만

제신문, 2008. 10. 9).
 17) 65개국을 대상으로 한 2008년도 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1단계 상승한 22위를 기록했다(아시아 경제, 2008. 10. 1).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 이들 기관이 사용하는 지표들은 치안활동의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치안활동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범죄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치안활동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쓰이는 범죄사건의 발생율과 같은 기본적인 통계치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Walker & Katz, 2005; Skogan, 2004; Langworthy and Travis, 2002) 사용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각 평가기관들의 측정지표가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은 이를 실증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WEF의 지표에는 법 집행의 공정성이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안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반대로 IMD의 지표에는 테러로 인한 기업비용이나 경찰서비스의 신뢰도 등은 담겨있지 않다. 사실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수백 개 문항 중에 3-4개의 설문문항으로 국가의 치안활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치안관련 지표에 대해서 단 하나의 질문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사회조사에서는 하나의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질문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객관적인 자료와 주관적인 자료를 혼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가경쟁력 조사기관들이 치안관련 지표조사의 문제점을 감안해 볼 때, 보다 정치한 치안경쟁력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설문대상자의 선정과 지표의 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4장 공식범죄통계와 피해자조사

제1절 공식범죄통계

1. 현황

경찰기관의 업무수행이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 많은 연구(Bayley, 1996; Kelling, 1996 Moore and Braga, 2004)에서 경찰의 범죄통제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있으며, 범죄통계(crime statistics)를 활용하여 이를 측정하도록 권고한다는 점은 이미 상술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도 세계 각국의 치안경쟁력을 비교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로서 공식범죄통계를 사용하고자 한다.

범죄통계 자료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공식범죄통계자료를 직접 구하기 보다는 국제연합(유엔, UN) 등 국제조직에서 이미 수집하고 있는 2차 자료(secondary data)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선 각국의 공식범죄통계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작업자체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2차 자료의 이용은 그러한 어려움을 대폭 줄여준다. 또한, 유엔에서는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국가간 범죄율 비교와 범죄율 변화경향 연구를 위해 범죄자료를 포함한 표준적인 형사사법통계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각 국에 배포하고 가능한 이 표준에 따르도록 독려하고 있어(형사사법통계시스템 개발 지침, 유엔, 2003)¹⁸⁾ 수집된 자료의 질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따로 각 국의 공식범죄통계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국가간 범죄율 비교를 위해 사용되어 온 자료는 주로 네 가지였는데, 인터폴(Interpol)에 의한 공식범죄통계 조사, 유엔의 범죄경향 및 형사정책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사 및 국제범죄피해조사(ICVS), 그리고 유엔 국제보건기구(WHO)에 의한 살인사건 자료 조사가 그것이다. 이들은 모두 수년 간 비교적 많은 나라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그

18) Manual for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http://unstats.un.org/unsd/publication/SeriesF/SeriesF_89E.pdf).

결과를 발표해왔다. WHO는 매년 죽음에 관한 조사를 통해 살인통계를 수집하는 것이며, ICVS는 국민면접을 통해 경찰에 보고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범죄와 범죄두려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폴과 유엔의 공식범죄통계 조사만이 각국의 경찰에 의해 보고된 범죄통계자료를 수집하는 것인데, 아쉽게도 인터폴에서 2005년도부터 더 이상 경찰자료를 수집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지금은 유엔의 자료만이 각국의 경찰의 범죄통계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소스가 되었다(Rubin et al., 2008).

따라서 이 장에서는 UN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공식범죄통계를 위주로 2차 자료가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국가간 치안경쟁력의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지표로써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유엔 범죄 조사

가. 개 관

현재 유엔에서는 세계 각국의 범죄경향과 이에 대응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유엔 범죄경향 및 형사사법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사’(The United Nations Surveys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이하 유엔 범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1970년대 초반 유엔총회 결의안에 의해 시작되어 시행초기에는 5년 주기로 실시되다가 1995년 6번째 조사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고 있다.¹⁹⁾ 현재 제 11차 조사(2007-2008년)가 진행 중이다.²⁰⁾ 조사 업무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소재하고 있는 유엔 마약·범죄국(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에 의해 주관되고 있는데, UNODC가 각 유엔 회원국(2008년 현재 192개국)의 외교부에 조사도구(설문지)를 배포하면 각국의 외교부가 다시 통계청이나 내무부와 같은 각 국내 범죄통계 담당기관에 보내어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Rubin et al., 2008), 평균 70여 개국이 조사에 응하고 있다.

19) 조사는 2년에 한번씩 하지만, 매 조사마다 2년간의 응답을 각각 요구한다.

20) 1·2차 조사: 1970-1980 / 2·3차 조사: 1975-1986 / 4차 조사: 1986-1990 / 5차 조사: 1990-1994 / 6차 조사: 1995-1997 / 7차 조사: 1998-2000 / 8차 조사: 2001-2002 / 9차 조사: 2003-2004 / 10차 조사: 2005-2006 / 11차 조사: 2007-2008

유엔 범죄 조사의 목적은 범죄와 형사사법시스템의 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세계적인 범죄 동향을 파악하거나 국가간 범죄처리과정을 비교하는 등 다양한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나 국가군, 또는 세계 단위에서의 정책결정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조사는 각 국으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죄통계 입력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많은 나라의 연구자들이 이 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서 이용하고 있다(형사사법통계시스템 개발 지침, 유엔, 2003).

나. 조사 내용 및 활용방안

유엔 범죄조사는 범죄와 범죄인에 대한 경찰 보고뿐 아니라 검찰, 법원, 교정 등 형사사법시스템을 이루는 주요 기관들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2001년에 실시된 제 7차 조사(1998-2000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²¹⁾ 경찰 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정보에는 경찰관의 수(성별), 경찰 예산, 총 범죄 건수(죄종별), 초범자 수(죄종별), 총 범죄자 수(성인범/소년범 구분, 성별 구분) 등 활용도 높은 자료들이 많이 있다(표 10 및 부록 참조). 범죄건수의 경우, 범죄사건을 살인(살인, 살인미수, 총기관련살인, 총기관련살인미수, 과실치사), 폭행(단순폭행, 가중폭행), 강간, 강도, 절도(소액절도, 다액절도), 자동차절도, 주택침입/침입절도와 같은 전통범죄 외에도 사기, 횡령, 마약, 마약밀매, 뇌물/부패, 유괴, 인신매매, 밀입국, 위조화폐, 조직범죄²²⁾ 등 다양한 범죄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범죄현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21) 2008년 초에 실시된 제10차 조사(2005-2006년) 등 여타 최근의 조사 내용들과 큰 차이가 없다.

22) Intentional Homicide, non-intentional homicide, assault, rape, robbery, theft, motor vehicle/automobile theft, housebreaking/burglary, economic fraud, embezzlement, drug-related crimes, drug trafficking, bribery and/or corruption, kidnapping, human trafficking, smuggling of migrants, counterfeit currency offenses, participation in organized criminal groups.

〈표 9〉 유엔 범죄경향 및 형사사법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사의 통계정보 목록

해당기관	조사 내용*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 수 (성별) ■ 총 예산 ■ 범죄 건수 (죄종별 건수) ■ 혐의를 받거나, 체포되거나, 경고받은 자 수 (죄종별) ■ 초범자 수 (죄종별)
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수 (성별) ■ 총 예산 ■ 기소된 자 수 (죄종별, 성인/소년, 성별)
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 수 (신분별, 성별) ■ 총 예산 ■ 형사법원에 출석한 자 수 (처분별 : 유죄, 무죄, 기타) ■ 유죄판결 받은 자 수 (죄종별) ■ 유죄판결 받은 성인 (선고유형별) ■ 유죄판결 받은 자 수 (성인/소년, 성별)
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도소, 구치소 등을 포함한 교정 기관 수 (성인, 소년기관 구분); 수용 가능 인원 (침상 수) ■ 교도관 수 (성인, 소년 기관 구분 ; 성별) ■ 총 예산 ■ 일별 수감자 수 (유형별: 재판대기 또는 수형중 등) ■ 재판대기 성인 수감자의 평균 구류 기간 (체포에서 확정판결까지 기간) ■ 유죄판결 이후 성인의 수형 기간 ■ 일별 유죄판결 받은 자 수 (성인/소년, 성별) ■ 일별 집행유예자 수 (성인/소년) ■ 일별 가석방자 수 (성인/소년)

* World Bank의 인구자료를 이용하여 100,000당 수치도 함께 제공함

유엔 범죄조사에서는 죄종별로 범죄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유엔에서 제공하는 각 국가의 인구수를 이용하면 국가의 전체 범죄율은 물론 범죄종별 범죄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1970년부터 축적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범죄율의 증감을 파악할 수도 있다. 범죄율은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한 시점에서 국가간에 횡단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범죄에 대한 정의, 신고행태, 처리 및 저장 행태 등이 상이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면 범죄율의 증감은 그 타당도가 매우 높아 국가별 통계관리특성에 관계없이 상당히 정확한 비교를 가능케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 범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범죄율과 범죄증감율을 모두 계산하여 치안경쟁력 측정의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각 유엔범죄조사에서는 경찰이나 다른 형사사법기관과 최초의 공식적 접촉을 한 자 즉, 범죄별로 혐의받은 자, 체포된 자, 그리고 경고를 받은 자의 수를 집계하고 있다. 한국의 개념으로 보면 검거율에 가까운 개념이지만, 유엔에서는 이것이 혐의자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소제목도 특정범죄의 혐의자 (suspects)수라고 하고 있어 이를 검거율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 자료를 검거율의 대체해 사용한다고 해도 한국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치안경쟁력 자료로 쓰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한국의 경찰은 범죄사건의 발생은 물론 검거율이 경찰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어 통계를 일부 조작해서라도 검거율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다(탁종연, 2006; 탁종연, 2007). 살인사건의 검거율이 100%가 넘는다면, 절도의 검거율이 40%를 초과하는 것은 외국 경찰이나 범죄학자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볼 때 유엔의 혐의자 수 자료는 치안경쟁력 지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작용의 효율성도 경쟁력의 한 지표로서 측정하고자 하는바, 경찰에 대한 투자의 지표로서 인구 10만 명에 배정된 경찰관수나 경찰예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엔 조사 자료에 있는 경찰관 수와 경찰 예산에 대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 두 가지 지표들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다.

UN에서는 범죄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²³⁾ 현재 2003년에 실시된 제 8차 조사(2001-2002년)까지의 결과는 모든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2005년에 실시된 제 9차 조사(2003-2004) 자료는 살인건수만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이후 조사 자료는 현재 유엔 마약·범죄국에서 자료를 정리 중에 있다.²⁴⁾

23) 자료는 유엔 마약·범죄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unodc.org/unodc/en/data-and-analysis/Eighth-United-Nations-Surveyon-Crime-Trends-and-the-Operations-of-Criminal-Justice-Systems.html>.

24) 우리나라의 10만 명 당 살인율은 2003년 2.19건(총 1,038건), 2004년 2.20건(총 1,041건)이었다. 아울러 2003년 실시된 제 8차 조사(2001-2002년)에서는 검찰과 교정 자료만 보고가 됐

UN은 통상 각종 연구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에 최근 자료들도 곧 공개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치안경쟁력 조사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 문제점

유엔의 범죄조사는 표준화된 설문 양식을²⁵⁾ 사용하여 진행하기는 하지만, 수집된 자료를 국가간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나라마다 통계를 수집하는 절차와 기준이 달라 자료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때로는 한 국가 내에서도 기관끼리 서로 상충되는 응답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각 나라의 자료 수집 과정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유엔에 보고되는 자료는 국제사회에 공개되기 때문에 각 회원국들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 즉, 범죄 현실과 보고되는 자료 사이에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회원국의 응답율이 3-40%에 머무는 것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점이 원인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1년 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등 참여가 저조했으나, 한국 경찰이 주관하여 치안경쟁력 조사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참가할 것임으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셋째, 유엔 범죄조사는 경찰이 수집하는 공식범죄통계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시민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경찰이 기록하지 않는 범죄는 기록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실제 발생했지만 공식통계에는 누락되는 암수범죄는 각 나라의 법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전체적인 비율이 다를 뿐 아니라, 죄종별로도 그 비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전체 범죄의 신고율이 22%수준으로 낮을 뿐 아니라(장준오, 2000), 절도나 성범죄 등에서는 특히 누락비율이 높아 다른 나라의 통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²⁶⁾

을 뿐 경찰을 포함한 다른 분야의 자료는 보고되지 않았다.

25) 설문 양식은 유엔 마약·범죄국 홈페이지(<http://www.unodc.org/unodc/index.htm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부록에 경찰부문에 대한 설문 내용만을 따로 첨부하였다.

26) 2000년 세계범죄피해조사결과 한국에서 성범죄의 신고율이 불과 5%선이며 주거침입절도 36%, 강도 31%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준오, 2000). 더욱이 경찰은 절도사건들에 대하여 통계를 누락하는 비율이 높아(탁종연, 2006), 한국의 절도 검거율은 40-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절도의 검거율이 국제적인 기준(15%선)에서 보면 지나치게 높아 일본에서는 한국의 범죄 통계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탁종연, 2006). 따라서, 범죄통계를 비교할 때는 살인이나 자동차절도²⁷⁾와 같이 암수 범죄비율이 낮은 범죄에 집중하거나, 범죄피해조사(crime victimization survey)등을 활용하여 암수범죄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넷째, 유엔의 설문양식에서 범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기는 하지만, 나라마다 범죄에 대한 세부적 법률적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즉, 동일한 행위가 어떤 나라에서는 상해가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폭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라마다 문화와 전통이 달라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식통계자료를 제출하는 나라들의 수가 많지 않은데다 이들 나라 대부분이 중·선진국이어서 이론 형성과 비교 연구에 한계가 있다 (형사사법통계시스템 개발 지침, 유엔, 2003).

본 연구에서는 범죄율 자체보다는 범죄율의 증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치안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하며, 그럴 경우 위에서 지적한 문제로 인해 본 연구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마지막 문제점, 즉 주로 중·선진국에 국한된 적은 수의 표본 문제는 유엔 범죄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데 있어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상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0〉은 지금까지 실시된 유엔 범죄 조사의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제 8차 조사에서 가장 낮은 34.5%의 응답률을 보인 반면 제 4차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61.6%의 응답률을 보여 편차가 약 27%에 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응답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응답률이 40%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수로 살펴보면 약 70여 개국의 자료가 활용 가능해 보인다 (Rubin et al., 2008).

27) 자동차절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세계적으로 신고율이 높다. 한국의 경우에도 신고율이 74%로 전체 조사대상 범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준오, 2000). 또한 93년부터 2005년까지 수행된 한국 범죄피해조사에서도 자동차절도 신고율은 50-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지선 외, 2006).

〈표 10〉 유엔 범죄 조사에 대한 회원국의 응답률

조 사	조사 기간	조사 년도	회원국 수*	응답한 국가	
				수	%
1차	1970-1975	1978	149	72	48.3
2차	1975-1980	1983	157	88	56.1
3차	1980-1985	1988	159	93	58.5
4차	1986-1990	1992	164	101	61.6
5차	1990-1994	1996	184	103	56.0
6차	1995-1997	1999	184	83	45.1
7차	1998-2000	2001	189	92	48.7
8차	2001-2002	2003	191	66	34.5
9차	2003-2004	2005	191	75	38.7

그런데 이 응답률에는 큰 지역적 차이가 있다. 〈표 11〉에 나와있듯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많은 북 아메리카와 유럽은 응답률이 높은 반면, 다른 지역은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국가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HDI (Human Development Index)가 응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이 드러났다. 따라서 발전 정도가 낮은 나라들의 응답률을 높이는 것이 범죄율을 포함한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의 국제적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지름길이라 하겠다(Rubin et al., 2008). 다행히도 본 연구의 목적이 국제적 경향의 파악보다는 국가간 치안경쟁력 비교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 없이 접근 가능한 나라의 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비록 40%에 미치지 못하는 응답률이지만 70여 나라의 자료가 활용 가능하다면 그 자체로도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²⁸⁾ 사실, 이번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거의 이들 중진국 이상의 국가이므로 유엔의 범죄조사를 활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8)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응답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전술한대로 나라마다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다르거나 표준화된 구분 기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Rubin et al., 2008: 56).

〈표 11〉 유엔 범죄 조사에 대한 지역별 응답률 (2001-2002 조사)

지 역	회원국 수*	응답한 국가	
		수	%
아프리카	53	7	13.2
아시아	45	13	28.8
유럽	44	31	70.5
라틴 아메리카	32	10	31.2
북 아메리카	3	3	100.0
오세아니아	14	2	14.3
전 지역	191	66	34.5

3. 인터폴 범죄 조사

인터폴 범죄 조사가 비록 2005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인터폴은 가장 역사가 깊고 규모가 큰 국제경찰조직으로서 범죄자료 수집 방식이나 응답률 등에서 유엔 조사와 차이가 있어 간단하게나마 그 활용가치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인터폴 범죄 조사는 1950년부터 시작되어 1992년까지 2년마다 실시되어 오다가 1993년을 기점으로 2004년도까지 매년 실시되었다. 유엔의 조사와 인터폴의 조사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범죄 유형별로 표준화된 정의를 사용되지만 인터폴 조사는 해당국의 정의에 따른다는 것이다. 즉, 해당국의 공식범죄 통계를 가감 없이 인터폴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²⁹⁾ 따라서 인터폴의 정의는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인터폴 조사의 응답률을 살펴보면 유엔조사와 마찬가지로 편차가 크고 최근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12〉 참조).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와 응답할 가능성 간에도 유엔 조사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약하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된다(Rubin et al., 2008).

많은 나라들이 유엔과 인터폴에 모두 보고를 하고 있으나, 일부는 유엔에만 보고를 하고 또 다른 일부는 인터폴에만 보고를 하고 있다. 이 사실은 인터폴 자료가 비록 과거자료에 국한되지만 유엔 자료를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2002년도

29) 따라서 범죄유형별 응답률이 유엔 조사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경향이 있다(Rubin et al., 2008: 62).

유엔과 인터폴 범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37개국은 유엔과 인터폴 양 기관의 조사에 응답을 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27개국은 유엔 조사에만 응답을 했고

〈표 12〉 인터폴 범죄 조사에 대한 응답률

조사 년도	회원국 수*	응답한 국가	
		수	%
1959-60	64	54	84.4
1961-62	79	68	86.1
1963-64	89	68	76.4
1965-66	95	75	78.9
1967-68	100	58	58.0
1969-70	105	75	71.4
1971-72	111	71	64.0
1973-74	117	60	51.3
1975-76	122	47	38.5
1977-78	126	58	46.0
1979-80	127	73	57.5
1981-82	133	50	37.6
1983-84	135	83	61.5
1985-86	138	120	87.0
1987-88	146	86	58.9
1989-90	150	93	62.0
1991-92	158	96	60.8
1993	174	80	46.0
1994	176	96	54.5
1995	176	93	52.8
1996	177	112	63.3
1997	177	115	65.0
1998	177	114	64.4
1999	178	95	53.4
2000	178	80	44.9
2001	179	73	40.8
2002	181	67	37.0
2003	181	79	43.6
2004	182	61	33.5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28개국은 인터폴에만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범죄유형별 통계는 나라마다 정의가 달라 사용할 수 없겠지만, 인터폴에만 응답한 28개국의 전체 범죄율에 관한 자료는 유엔 자료에 대한 보충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범죄율 증감 분석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현재 유엔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인터폴에만 보고하던 나라들이 유엔 범죄 조사에 응한다면 응답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ubin et al., 2008).

4.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식범죄통계 자료가 치안경쟁력의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인 경찰의 범죄통제(crime control)을 측정하는 데 필수적인 지표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사용해야 할지를 검토하였다. 현재 세계 각국에 대해 공식범죄통계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유엔의 범죄조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의 범죄조사는 표준적인 범죄의 정의를 담은 설문지를 통해 최종별 총 범죄사건수, 경찰관 수, 경찰 예산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치안당국의 범죄통제능력과 효율성 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유엔의 홈페이지와 보고서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개되기 때문에 치안경쟁력 평가자료로서 뛰어난 공신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엔의 범죄조사자료를 활용하는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엔 범죄조사의 응답률이 40% 이하로 낮은 편이므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치안경쟁력 평가자료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경쟁력 평가기관들도 통상 선진 60여 개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국의 국가경쟁력 상대국가는 거의 모두 유엔조사에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각국의 범죄통계가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범죄에 대한 해석의 차이, 통계수집절차와 기준이 다름, 그리고 시민들의 범죄신고율과 경찰의 기록율의 차이로 인해 통계자체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범죄를 비교하기 보다는 이러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범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과 자

동차절도 등 범죄의 해석차이나 암수범죄의 비율차이가 적은 범죄만을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유엔의 범죄자료는 이러한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치안경쟁력 평가를 위해 매우 유용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세계 70여 국가의 공식 범죄율을 파악할 수 있고, 특히 범죄 증감율은 범죄율 자체보다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아 활용 가치가 크다 하겠다. 또한, 경찰관의 수나 경찰의 예산자료는 경찰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범죄피해조사

1. 범죄피해조사와 치안경쟁력 평가

한 나라의 범죄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공식범죄통계 외에도 범죄피해조사자료가 자주 쓰인다. 따라서 치안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범죄피해조사의 실태를 알아보고 실제로 활용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조사(crime victimization survey)란 범죄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일반시민들에게 일정기간 경험한 범죄피해 경험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을 설문하는 것이다(Doerner and Lab, 2002). 이 조사는 공식범죄통계가 가지는 한계, 특히 신고되지 않은 범죄의 측정누락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1960년대 이후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약 60개국가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시행하고 있다³⁰⁾(Groves and Cork, 2008).

범죄피해조사는 범죄현상을 연구하는 도구로서 많은 장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암수범죄(dark figures of crime) 즉 신고되지 않는 범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범죄통계보다 더 정확한 범죄율을 측정할 수 있다(Cantor and Lynch, 2002). 사실 암수범죄의 비율이 생각보다 크고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식범죄통계만으로는 정확히 범죄현상을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³¹⁾ 또한

30) 한국의 경우에는 1992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약 3년 주기로 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김지선 외, 2006).

31) 한국의 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범죄신고율은 통상 절반이 넘지 않고, 성범죄와 같이 범죄피해 자

범죄피해조사를 이용하면 국민들이 치안 서비스로 인해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고, 또한 치안서비스를 어떻게 평가하는 지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조사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범죄피해조사를 경찰기관의 업무수행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지금도 미국 법무부 사법통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에서는 매 6개월마다 전국피해조사(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를 실시하는 외에, 각 경찰기관별로 자신들의 업무평가를 시민들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NCVS를 약간 수정한 지역사회조사(Community Survey)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Weisel, 1999).

사실 국가경쟁력평가기관들의 치안분야 조사도 넓게 보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조사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업인을 설문대상으로 한정하고 일반인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가 있다. 국가 간 치안경쟁력을 완전히 비교하려면 여러 국가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국제범죄피해조사(ICVS)

세계 각국의 범죄실태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국제연합(UN)에서 1989년부터 3-4년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국제범죄피해조사(International Crime Victim Survey or ICVS)이다(Nieuwbeerta, 2002). 이 조사는 이제까지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78개국 32만여 명을 대상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ICVS, 2008). 이 조사에서는 국가전체 또는 대상국의 수도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절도, 강도, 성범죄, 폭력 등 개인적인 범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치안상황에 대한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 조사는 일반적인 범죄피해자조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환경과 표본 크기 등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Lynch, 2002). 이하에서는

체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율이 6%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 외., 2006).

ICVS가 국가간 치안경쟁력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부내용과 특징, 문제점 등을 살펴보겠다.

3. 국제범죄피해조사의 내용 및 활용방안

국제범죄피해조사는 유엔국제지역간 범죄 및 사법연구기관(Unite Nations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or UNICRI)가 주관하여 전세계 약 70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각국의 범죄피해 실태, 범죄에 대한 두려움 등 범죄에 대한인식, 그리고 경찰에 신고여부와 경찰에 치안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UNICRI, 2008).

설문의 초점은 범죄피해의 실태인데, 조사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강도, 절도(차량절도, 차량부품/물품절도, 차량손상, 오토바이절도, 자전거절도, 주거침입절도, 대인절도), 성폭력, 폭력/상해/협박, 소비자 사기, 부패 등 주로 국민들이 생활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전통적 범죄들이다.

국제범죄피해조사의 특징은 동일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각 나라의 시민들에게 자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질문하는 것이다(장준오, 2000). 따라서 조사결과의 비교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유엔에서 수행하는 범죄조사의 경우, 각국에 동일한 설문문항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범죄통계의 수집절차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하기 곤란했다는 점에 상기해 비교해 볼 때, 범죄(피해)율을 비교산정하기 위해서는 ICVS의 결과가 유엔범죄조사 보다 우월한 방법임에 틀림없다. 물론, 각 나라별로 시민들이 국제범죄피해조사에 자신의 범죄피해 경험을 사실대로 응답하는 비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인 비교자료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임에 틀림없다. 조사자료도 UNICRI의 인터넷 페이지³²⁾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라도 무료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자료가 충분히 있다면, 국제 치안경쟁력 연구에서 ICVS에서 조사한 강도, 절도, 성폭력, 폭력, 상해, 협박 등 4가지 전통범죄의 실태를 범죄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사기와 부패는 경찰의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범죄로 보

32) 인터넷 주소는 <http://www.unicri.it/wwd/analysis/icvs/data.php>.

기 힘들기 때문이다. 유엔의 나라별 인구통계와 합하여 각 범죄별로 인구 10만 명 당 얼마나 이러한 범죄를 경험했는지를 비교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도, 주거지역에 대한 안전도 평가 등도 같은 문항을 통해 공통적으로 질문하고 있으므로, 매우 귀중한 치안경쟁력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국제범죄피해조사의 문제점

ICVS는 나라간 치안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매우 적합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는 그 자료를 조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참여대상국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통상 4년에 한번 정도 실시해왔으며,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2004/2005년에도 30개국, 33개 도시만 참여하는 데 그쳤다 (UNICI, 2008). 한국의 경우, 2000년 서울 한 도시만이 이 조사에 한차례 참여했기 때문에 더욱 더 비교하기 곤란하다. 향후, 한국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한국 전체를 대상으로 이 조사에 참여한다면 좋은 비교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이용 불가능한 자료이다.

또한 ICVS는 범죄피해조사로서의 일반적 한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조사는 시민들의 주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경찰의 업무평가로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예: Mastrofski, 1996: 210). 사실 성별이나 나이대별로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정도와 범죄피해의 위험도는 정반대인 경우도 보고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평가도 매우 주관적이다. 예를 들어, 촛불시위가 특정그룹에게는 자유의 표현일 수 있고, 다른 그룹에게는 무질서와 불법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평가를 순전히 주관적 평가에만 의존한다면 경찰의 객관적 활동이나 구체적 경험보다는 평가자들의 기대치와 선입관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5. 요약

범죄피해조사는 시민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경험한 범죄피해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는

것으로서 통상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까지 부수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조사는 경찰에 신고 되지 않은 범죄피해와 두려움과 같은 주관적 인식까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안경쟁력 지표에 포함해야 할 주요한 도구임에 틀림없다. 특히 UN에서 실시하고 있는 ICVS는 여러 선진국가에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비슷한 설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설문대상 범죄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율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고, 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비교하기에 매우 적당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수립하고자 하는 치안경쟁력지표에서는 이 ICVS의 결과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조사에 응하는 국가가 한정되어 있고, 특히 한국이 2000년에 1회 참가한 이후 참가하지 않고 향후 계획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따라서, 한국이 주도하는 치안경쟁력 조사에서는 기존의 ICVS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국제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5장 새로운 치안경쟁력 지표의 모형

제1절 개 설

이제까지 경찰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연구의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왜 기존의 국가경쟁력 평가기관들에서 실시하는 치안지표나 국제기구의 범죄통계조사들이 나라간 치안경쟁력을 비교함에 있어 부적절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치안경쟁력을 평가함에 있어 기존의 평가도구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인들만을 대상으로 수집한 주관자료를 이용하는 데서 벗어나 표본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관자료와 객관자료를 적절히 이용하며, 다양한 복수의 지표를 사용하여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기존의 연구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경찰의 효과적 업무수행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평가영역과 세부지표들을 제시하고, 각 평가영역에 대한 가중치 부여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제시된 평가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로 한다.

제2절 치안경쟁력 평가영역 및 지표

경찰의 업무수행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경찰활동의 어떤 측면을 평가할 것인가, 즉 평가내용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몇몇 학자들은 경찰기관의 효과적 업무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경찰이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업무분야를 제시한 바 있으며, 이들의 업무평가 분야는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Moore and Braga(2003)가 제시한 내용은 Bayley(1996)가 제시한 객관지표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Kelling(1996)이 열거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Moore와 Braga

가 제시한 평가영역에, Bayley가 추가적으로 제시한 주관적 지표를 보완한다면 현 단계에서 가장 완전한 평가지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Bayley의 지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의 지표 중 상당수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특정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고, 소규모 경찰관서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가단위의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는 지표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예: 해결된 지역사회 문제 회수). 새로 제시할 치안지표에 Moore와 Braga가 제시한 경찰관서의 재정적 자원의 공정한 효율적, 효과적인 사용은 제외 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에 대해서는 평가요소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의 재정자원 사용은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하였다. 대신 Bayley가 제시한 간접지표 즉, 경찰작용의 효율성을 추가함으로써 지표의 완전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표 13〉 새로운 치안경쟁력 평가영역 및 측정지표

대 영역	세부 영역	측정 지표
안전과 보안증진	범죄와 범죄피해 감소 (Reduce Crime and criminal victim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인율 ■ 자동차절도율
	두려움 감소 및 안전감 증진 (Reduced Fear / Enhance Secu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에 대한 두려움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 (Guarantee safety in public spa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율 ■ 공원/교통수단에서의 안전도 ■ 무질서에 대한 효과적 대응
공정한 법집행	경찰력과 경찰권의 공정한 사용 (Use force and authority fair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평한 경찰서비스 제공 ■ 부패통제 ■ 지나친 공권력 사용감축 ■ 인식된 합법성
고객 서비스	고객의 만족과 합법성 획득 (Satisfy customer demands / Achieve legitimacy with those polic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 만족 ■ 피단속자로부터 합법성 인정
경찰작용 효율성	경찰력 대비 범죄대응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1인당 담당인구수 ■ 총 국가예산 대비 경찰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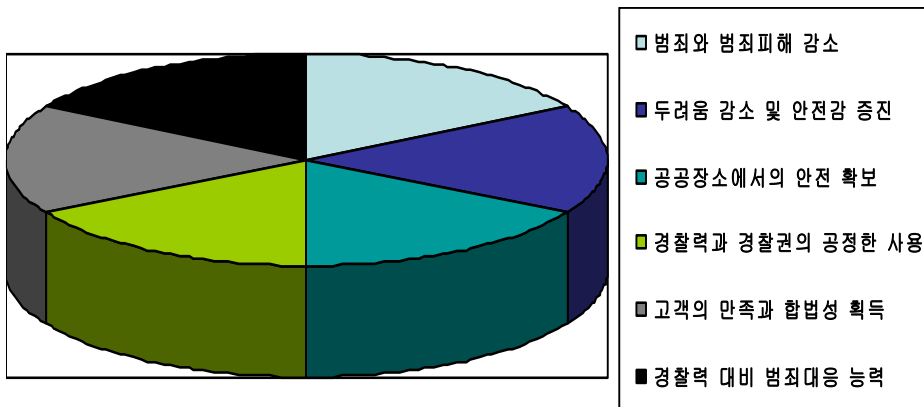
〈표 13〉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치안경쟁력 평가영역과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안경쟁력을 (i) 안전과 보안증진, (ii) 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 (iii) 고객 서비스, (iv) 경찰작용의 효율성 등 네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고, 이를 다시 범죄와 범죄피해 감소, 두려움 감소 및 안전감 증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 경찰력과 경찰권의 공정한 사용, 고객의 만족과 합법성 획득, 경찰력 대비 범죄대응 능력 등 여섯 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고자 한다. 각 영역은 하나에서 네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바, 총 14개의 지표가 직접적인 측정 대상이 될 것이다.

제3절 가중치 부여 기법

1. 가중치 부여의 필요성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여섯 가지 세부 평가영역들을 보여주는데, 현재로서는 각 영역마다 동일한 가중치가 부여된 모습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영역과 조사자료의 특성(공식자료 또는 설문)에 따라서 가중치를 달리 부여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층분석절차(A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2〉 새로운 치안경쟁력 평가 세부영역



치안경쟁력의 각 세부 영역들이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국가 간 비교에 있어서는 나라마다 문화, 정치체제, 정책방향 등이 상이하어 세부 영역들 간에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계에서는 여러 지표들간의 가중치를 정하는 방법에는 계층분석절차(AHP) 기법, 요인분석(또는 주성분분석)의 적재량이나 회귀분석의 회귀계수를 산출하여 활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조병인, 2005).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비교적 근래에 개발되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AHP 기법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AHP 기법을 이용한 치안경쟁력 평가영역 가중치부여 방법

AHP 기법은 Thomas L. Saaty(1980) 교수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는데, 이는 설문 조사를 통해 응답자들로 하여금 평가요소들을 쌍대 비교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하여 각 평가요소가 갖는 상대적 중요도를 통계적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윤재곤, 1996; 조병인, 2005에서 재인용). AHP를 적용할 경우 평가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함에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에 의한 일방적 가중치 산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중치를 산출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결과의 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AHP 기법은 평가의 목적과 수단(평가 구성요소)을 계층적으로 연결시켜 주며, 복수의 요소들에 대한 가중치를 동시에 고려하기보다는 두 개씩 짝을 지어 이원비교를 하게 함으로써 평가하려는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 판단을 명확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한 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할 때 일관성 정도(consistency ratio)를 알려주어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수정작업을 가능하게 해준다(김정호 외, 2002; 조병인, 2005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가중치부여를 위해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자 하는 여섯 가지 세부 영역들에 대해 AHP 설문을 만들어 보면 <표 14>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응답자들은 먼저 A요인으로 지정된 “범죄와 범죄피해 감소” 영역과 B요인으로 지정된 “두려움 감소 및 안정감 증진”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게 된다. 만일 응답자가 A(범죄와 범죄

에서 큰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큰데다가 동 영역에 높은 가중치마저 받게 되어 선진국들에 매우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적시되는 경우, 즉 특정 국가군의 영역별 선호도가 다르고 또한 조사에 참여한 나라들의 특성이 한 쪽 국가군으로 치우쳐져 있어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 국가군별로 따로 가중치를 계산하여 평가하면 특정 국가가 해당 국가군내에서 차지하는 치안경쟁력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부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각국의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양식의³³⁾ 맨 뒷부분에 위 <표 14>를 첨부하여 응답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제4절 평가방식 : 측정의 세부사항

1. 범죄율(crime rates)

평가영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은 경찰의 범죄와 범죄피해의 감소, 혹은 범죄통제이다. 경찰의 활동이 이런 범죄의 증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범죄학자들³⁴⁾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Bayley, Moore, Kelling교수 등과 마찬가지로, 경쟁력 있는 경찰활동은 범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전제하에 범죄율을 평가요소로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범죄와 범죄피해의 감소는 통상 공식범죄통계의 범죄율(crime rates)을 통해 조사한다. 즉, 인구 100,000만 명당 발생한 범죄사건 수를 계산한 범죄율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러 나라의 범죄율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자료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각 나라 경찰기관의 공식범죄통계를 통해 범죄율을 확

33) 설문 대상 및 인원은 6장 참고.

34) 이들 회의론자들은 범죄의 증감은 경찰의 활동보다는 경제, 사회, 문화, 또래 집단, 가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예: Gottfredson and Hirschi, 1990). 하지만, 상당수의 학자들은 경찰의 활동은 분명히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범죄에 초점을 둘 때 그러한 영향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Kelling, 1996).

인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나라의 경찰기관은 공식범죄통계를 수집·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경찰의 '범죄통계'나 검찰의 '범죄분석'에서 죄종별 범죄사건 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각 나라의 공식범죄율을 그대로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각 나라별로 범죄에 대한 개념이 상이할 뿐 아니라, 공식통계 기록관행, 범죄신고율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런 문제 때문에 Interpol에서도 이유로 각국의 공식범죄율을 비교를 포기한 바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범죄율을 조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국제기구에서 수집한 범죄통계자료를 제2차 자료로서 다시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국제범죄율 비교자료는 유엔의 범죄조사(The United Nations Surveys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와 국제범죄피해조사(Inter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그리고 세계건강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or WHO)의 세계 연간 건강통계(World Health Statistics Annuals)가 있다. 앞장에서 유엔의 ICVS가 범죄율을 비교평가하기에 표준화된 문항을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범죄의 피해경험은 물론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치안경쟁력 지표로서 적절한 자료임에 분명하지만, 한국을 포함해 조사에 참가하는 국가의 수가 너무 적어 현재로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세계건강기구의 세계 연간 건강통계도 치안경쟁력 자료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무엇보다 여기서 오직 살인(homicide)의 통계만을 수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이용 가능한 것은 자료는 유엔의 범죄조사뿐이다.

이미 앞 장에서 유엔의 범죄조사가 동일한 범죄개념을 적용한 표준설문을 이용하여 범죄율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다는 점을 설명한 바 있다. 특히 범죄에 대한 정의나 암수범죄의 비율 면에서 각 나라별 편차가 적은 범죄인 자동차절도와 살인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유엔의 범죄조사에 의해 조사된 살인율과 자동차절도율을 경찰의 범죄통제활동의 지표로 사용할 때에도 주의해야 점이 있다. 먼저 살인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살인의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법률적 정의가 다른 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사하기는 하나, 때로는 살인의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다(전돈수, 2007). 예를 들어, 강간치사나 강도치사의 경우와 같이 다른 범죄를 시도하다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살인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많은 국가에서 살인으로 산정하

기도 한다(탁종연, 2008). 따라서 이런 점을 분명히 조사한 후에 살인통계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활동이 살인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지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살인은 통상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의 감정적 대립의 결과로서 발생하거나, 우발적인 감정대립의 결과가 지나치게 중하게 나타난 경우 등이 많은데, 경찰의 순찰활동이나 수사활동이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의 공공질서 유지와 범죄예방 활동은 살인을 포함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Kelling, 1996), 살인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절도의 경우에는 위에서 논의한 문제가 비교적 덜하다. 절도의 경우에도 나라별로 법률적 정의가 다를 수는 있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고 또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미 서술한 바 있지만, 여러 범죄 중 자동차절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자동차절도의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보험사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범죄나 절도유형에 비해 시민들의 신고율이 매우 높고 경찰의 기록율도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외교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범죄피해율을 조사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면, 그다지 좋은 방안이 아닌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이들은 보안이 철저한 근무지와 고급주거지에 살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범죄피해에 노출될 확률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각 나라의 평균적인 시민들의 범죄피해 경험을 대표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범죄피해조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수행될 때까지는 유엔의 범죄조사 중 살인율과 자동차 절도율 즉, 인구 10만 명당 살인건수 및 자동차절도건수를 경찰의 범죄통계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조사년도 일년의 통계를 바로 사용하기 보다는 직전 2년의 통계를 포함하여 3년간의 통계의 평균치를 지표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당수 국가가 특정 연도에 통계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정연도의 예기치 못한 변화로 인해 통계치가 지나치게 증감한 것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연도의 통계만을 사용하면 소실자료가(missing data) 많아지거나 자료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의 주관적 감정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시민들에게 두려움의 정도를 직접 설문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이 범죄와 연관시키는 상징 또는 범죄에 대한 걱정 또는 감정적 반응³⁵⁾”으로 정의되고 (Ferraro, 1995:8). 범죄두려움은 통상 “당신은 야간에 당신 동네에서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하게 느끼십니까?”(How safe do you feel or would you feel being out alone in your neighborhood at night?) 또는 “당신은 야간에 당신 동네에서 혼자 걷고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How safe would you feel walking alone at night in your neighborhood?)라는 항목으로 측정되고 있다 (Baumer, 1985).

이러한 항목은 자신의 동네에 대해 안전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이 야간 순찰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한다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없다. 특히, 경찰활동의 범죄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지역사회순찰활동 등을 통해 범죄두려움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Henig & Maxfield, 1978 Moore & Trojanowicz, 1986; 정승민, 2007).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국제비교하기 위해 가장 좋은 조사방법은 ICVS를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곤란하다.

가능한 대안은 해당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하는 것이다. 후술하는 외교관조사를 통해 해당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들에게 야간에 도심에 혼자 있을 때(“How safe do you feel or would you feel being out alone in downtown?”) 또는 야간에 도심에 혼자 걷고 있을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How safe do you feel or would you feel walking alone in downtown?”) 질문하고 5점 척도(5:매우 두렵다, 4:두렵다, 3:보통이다, 2:두렵지 않다, 1:전혀 두렵지 않다)로 측정하면 될 것이다. 일반적인 피해조사와 달리 이웃에서

35) An emotional response of dread or anxiety to crime or symbols that a person associates with crime (Doerner, 1998: 281).

의 두려움이 아니라 도심에서의 두려움을 질문하는 것은, 외교관들은 통상 일반인보다 고급스럽고 안전한 동네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그들의 동네를 기준으로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두려움 수준과 유사한 느낌을 측정하려면, 일반인들도 통행하는 변화한 도심에서의 느낌을 묻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떤 자기방어(self-defense)행위를 하고 있는 지를 조사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 장소와 시간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어할 대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최인섭·김지선, 2007). 하지만, 조사대상자들을 외교관으로 한정할 때 이들은 통상 보안이 철저한 근무환경과 주거환경 속에서 머무르며, 위협노출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더욱 신중한 직업특성상 조사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Guarantee safety in public spaces)

공공장소에서의 안전확보는 크게 (i) 안전한 교통환경, (ii) 공원/대중교통/학교 등에서 안전, 그리고 (iii) 데모와 행진 등을 포함한 집단상황에서의 무질서 통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들 요소는 교통기능, 생활안전기능, 그리고 경비기능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항목은 범죄수사를 제외한 경찰의 기본기능에 대한 측정요소들인 것이다.

안전한 교통환경은 경찰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이 적은 환경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물론, 교통사고의 발생은 교통경찰의 활동 외에도 아니라 도로의 설계와 관리 그리고 시민의식 등이 모두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 교통경찰도 교통단속과 시민교육 등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안전한 교통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는 교통사망사고율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부상자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집계하지 않는 경우가(권세혁·탁종연, 2007)가 있어, 지표를 사망자 통계로 국한하는 것이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에 좋은 것이다. 현재 OECD와 국제도로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International Road Traffic Accident or IRTAD)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같은 기준으로 조사해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를 활발

히 활용하고 있다. 이 지표를 그대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공원/대중교통/학교 등에서의 안전확보는 시민들에게 직접 설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떤 설문조사도 이러한 공공장소에서의 안전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조사를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항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후술하는 외교관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들에게 당신 공원이거나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How safe do you feel at parks in downtown?” “How safe do you feel at bus or subway in downtown?”)를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외교관들은 통상 일반인보다 좋은 동네에서 주거하므로, 그들 이웃 공원이거나 대중교통의 안전감을 묻기보다는 도심에서의 느낌을 묻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데모와 행진 등 공공무질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또한 외교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조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들에게 주재국 경찰이 데모와 행진을 포함한 공공무질서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How effective are the police in the country of your residence in responding to public disorder, including demonstration and parade?”)를 질문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경찰력과 경찰권의 공정한 사용(Use force and authority fairly)

경찰이 공평하게 경찰력을 행사하는지가(fair law enforcement) 중요한 평가요소이다. 이 영역도 외교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귀하는 주재국의 경찰이 경찰서비스 제공을 공평하게 한다고 생각하는지 (Do you think the police in the country of your residence provide service fairly?)라는 질문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부패통제는 (corruption control)역시 외교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관들 역시 공무원이며 여러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경찰의 부패현상에 대한 보다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들에게 귀하는 주재국의 경찰이 부패했다고 생각하는지 (“Do you think the police in the country of your residence are corrupt?”)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활동에서의 지나친 공권력 사용여부(excessive use of force)는 경찰의 잔인성(brutality)를 측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교관들에게 귀하는 주재국의 경찰이 지나친 공권력을 사용하는지(“Do you think the police in the country of your residence use excessive force?”)를 질문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식된 합법성(perceived legitimacy)은 경찰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교관들에게 귀하는 주재국의 경찰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Do you think the police in the country of your residence perform legitimately?”)를 질문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고객서비스(Customer Service)

고객서비스는 경찰서비스를 요청하는 시민과 경찰 법집행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들이 경찰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그 나라의 시민들과 법 집행의 대상인 사람들을 설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제간 비교에서는 그러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항목 역시 외교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외교관도 경찰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들도 주재국에 거주하면서 자신과 가족이 강도와 절도 등 각종 범죄의 피해를 경험하거나 분실 등으로 인해 경찰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에서는 외교관들에게 귀하는 주재국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Have you ever asked for a help to the police in the country of your residence?”)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How satisfied were you with the service of the police?”) 여부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관들이 법집행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현지 국가의 경찰관들이 경찰활동 중 혐의자와 피의자 등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실상 이들은 적어도 자국민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험하는 경찰의 행태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도 많다. 이들에게 “귀하는 주재국의 경찰관들이 범죄자들을 존엄하게 다룬다고 보십니까?”(“Do you think the police in the

country of your residence treat the criminal with dignity?”)라고 질문하여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6. 경찰작용의 효율성(Efficiency of the Police Service)

경찰작용의 효율성은 경찰력구성이 경찰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경찰활동 자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유엔의 범죄조사에서 경찰의 수와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만일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표가 높게 나타난다면 그 나라의 경찰은 경쟁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에 투자되는 재정적 자원도 경쟁력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예산은 유엔의 범죄조사에서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만일 특정국가에 투입된 재정자원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력지표에서 높은 결과를 보인다면 그 경찰은 경쟁력 있는 경찰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경찰작용 자체의 효율성은 체포한 범죄사건 수와 범죄의 검거율을 통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요소를 측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체포사건 수의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체포대상 범죄, 체포의 법적 요건, 산정하는 대상(체포사건 또는 체포된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검거율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는 검거의 기준이 나라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검거율은 발생사건과 검거건수 두 가지 통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에 의한 통계조작의 가능성이 발생율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검거 사건수나 검거율을 통한 효율성 측정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장 치안경쟁력 조사의 시행 및 발표

제1절 외교관조사

치안경쟁력 지표 (Security Competitiveness Index or SCI)의 대부분은 외교관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설문 조사를 시행해야 할지 그 방법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모집단과 표본

본 연구는 전세계 각국의 치안경쟁력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문조사의 이상적인 모집단(population)은 세계 각국에 근무 중인 모든 직업외교관들이 된다. 이들은 직업특성상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모국은 물론 각 나라의 치안수준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욱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높은 학력과 교양을 겸비하고 나라별 상황을 비교·평가하는 일을 자주 수행하므로 국제 치안여건 비교에 대한 설문대상자로 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전세계 192개국³⁶⁾의 외교관들을 모집단으로 하는 것은 연구실행에 지나친 인적·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번 치안경쟁력 평가연구의 주된 목적이 한국의 치안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이제까지 진행된 연구에서 통상 한국은 OECD가입국 및 가입후보국³⁷⁾ 등과 비슷하게 평가 받았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연구시행 초기에는 비교대상국가를 IPS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65개 국가로 한정하고, 설문조사의 모집단도 이들 국가에 근무하는 외교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 UN의 범죄조사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도 대략 60여 개국이므로 평가대상국을 60개국 정도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36) 2006년 현재 UN회원국 수 (UN, 2008).

37) 2008년 현재 OECD에는 30개 회원국외 5개 후보국과 참여 5개국이 있다(OECD, 2008).

표본의 단위는 외교관 개인이 아니라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으로 해야 할 것이다. 표본을 외교관 개인으로 하고 표본을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는 하나, 모든 외교관들의 목록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들이 모두 조사에 응하기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WEF나 IMD등에서 각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문을 각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공관(대사관)별로 하나씩 발송하여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만 조사하는 것도 작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이때 보다 적절하고 통일성 있는 응답을 구하려면 조사의 구체적인 응답자를 경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주재관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도록 예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표집틀(population frame)을 구성하기 위해, 비교대상인 65개 국가에 나와 있는 대사관의 목록과 그 주소를 찾아 주소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작업은 조사를 실제로 시행할 기관이 연구의 후원자인 한국 경찰청과 외교통상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이들 나라에 모두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운영³⁸⁾하고 있으므로 각 대사관을 중심으로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행정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협조를 거부한다면 외국에 파견 나간 경찰주재관이 목록작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대사관을 표본단위로 설정할 경우에도, 표본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다. 전세계 65개국에 평균 100여 국가가 외교공관을 설치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만으로도 6,500개의 설문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한 나라의 치안경쟁력을 평가하는데 100여 국가의 외교관들이 평가를 한 것이 되므로, 조사결과는 높은 신뢰도를 갖추게 될 것이다.

2. 조사의 시행

설문조사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방식은 우편조사, 전화조사, 방문조사 등이 있다(Frankfort-Nachmias and Nachmias, 1996). 이번 조사에서 우편조사가 가장 적당하다. 6,500개 공관을 방문한다던가, 국제전화를 통해 설문하는 것은 인적으로 예산상으로도 어려울뿐더러, 현실적으로 이들이 전화를 통해 설문조사에 응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38) 2008년 현재 상주대사관 109개 등 총 153개의 재외공관을 운영중이다(외교통상부, 2008).

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우편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 경찰청과 외교통상부 등 후원기관과 연구주관기관의 연구배경 설명과 설문내용을 포함하여 등기로 공관대표자에게 발송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봉투에는 반송주소와 우표가 붙은 반송봉투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반송우표는 각 나라의 우표를 수집하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문서를 배송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에게 배송 및 반송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설문응답률을 높이는 것이 이번 조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Frankfort-Nachmias and Nachmias, 1996). 설문지와 설문봉투에 한국 외교통상부와 경찰청 등이 후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설문지 표지에 연구의 목적이 치안경쟁력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외에도 응답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우편설문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적어도 2차에 걸쳐 다시 설문지를 발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편을 발송할 경우, 국제속달로 보내는데 통상 3일정도 소요되고 응답기간과 반송기간을 감안할 때, 최초 발송 후 한달 후 1차 재 발송, 다시 한달 후 2차 재 발송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응답율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인터넷상에게 설문에 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응답자에게 최초설문지에 고유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는 최근에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성하는데 약간의 추가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반송우편요금을 아낄 수 있으며, 응답자가 설문지에 기입한 후 봉투에 넣는 것조차 귀찮아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또한 응답자가 한국의 정부가 후원한다는 점을 인터넷을 통해 확실히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다방면에서 응답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치안경쟁력조사는 비교적 대규모 조사사업이므로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인 비용은 연구용역비이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까지의 연구비용은 6,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설문조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적어도 1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측한다.³⁹⁾ 다만 이 비용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외교관설문

39) 갤럽 등 대규모 여론조사기관에서는 통상 설문대상자 한명당 적어도 1만5천에서 많게는 3만원 정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따라서 6,500명 기준으로 1-2억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 가장 많은 비용이 필요한 분야가 외교관 설문조사이다. 만일 한국에서 6,500개의 해외공관에 국제화물배송업체를 통해 왕복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려면 적어도 약 2억원(1회 3만원 기준) 이상이 필요할 것이다.⁴⁰⁾ 이 비용은 조사규모로 볼 때 그다지 큰 것은 아니지만, 연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65개국의 한국의 재외공관을 거점으로 하여 여기에서 각 나라의 공관에 우편물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재외공관에 보낼 때 봉투까지 완비하여 송부하면 현지에서는 운송업자에게 전달만하면 되므로 그다지 수고롭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각 공관에서 보내온 응답을 수거하는 작업은 상당히 귀찮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현지 한국 공관에서 100개 국가의 공관까지의 우편비용은 현지 우편요금만 부담하면 되므로 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65개 국가에 송부하는 100여 개의 설문지를 배송하는 비용이 약 650만원(10만원* 65개국)이 소요되는 외에, 현지 우편요금은 1회 왕복비용 약5천원을 기준으로 약 400만원 이내의(5천원*, 6,500공관) 비용이 들어, 총 배송비용은 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다만, 외교통상부가 관리하는 재외공관에서 이 조사를 도와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아마도 경찰주재관들이 파견된 곳에서는 이들에게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할 것이나, 그 업무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표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규모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대략 3천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판단한다.

제2절 연구실행기관

이번 연구를 실제로 진행할 기관은 한국의 기관이 되어 함은 당연할 것이다. 그 외 실행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외국의 경찰제도를 잘 이해하고 범죄학 연구방법론에 정통하면서 외국학자 및 경찰과 공동행사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치안경쟁력 평가사업은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 외에도 이를 해외

40) DHL 등 해외영업망이 큰 배송업체의 작은 서류의 편도 배송비는 2-3만원정도.

에 발표하고 보고대회도 개최하는 등의 작업을 포함하므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은 물론 국제적인 경험이 많은 단체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담당 기관은 공신력이 높고 이런 연구를 수행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에서 이런 조건을 두루 갖춘 기관으로는 아시아경찰학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아경찰학회(Asian Association of Police Studies)⁴¹⁾는 경찰과 범죄통제에 대한 연구활동과 국제협력 활동을 목적으로 2000년 경찰대학의 표창원교수와 국내외의 학자들이 설립한 한국주도의 국제연구단체로서, 지금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터키, 미국,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많은 경찰학자와 범죄학자, 그리고 고위직 경찰관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표창원교수를 비롯하여, 노성훈, 박현호, 이주락, 정진성, 탁종연 등 영국과 미국에서 범죄학 및 경찰학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전문성 면에서 국내최고의 기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학회는 '아시아태평양 경찰 및 형사사법'(Asia Pacific Journal of Police & Criminal Justice)이라는 국제학회지를 발간하는 한편, 2000년 제1회 서울학회를 시작으로 매년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10여 개국 이상의 경찰고위인사와 경찰학자들이 모여 각국의 주요 치안행정 이슈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2008년에는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제9차 연례 학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전문성과 국제경험 등을 종합해 볼 때, 아시아경찰학회가 이 연구를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도 치안경쟁력 평가조사 기관으로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으로 편제되어 있는 연구원은 종래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시작되어 형사법분야와 범죄학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온 기관이다. 이 기관의 장점은 1990년대부터 한국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해왔고, 특히 2000년에는 한국 ICVS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유엔의 마약 및 범죄국에서 관장하는 형사사법연구기관 연결망(United Nations Crime Prevention & Criminal Justice Programme)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도 강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연구원의 인적 구성이 치안경쟁력 조사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태동부터 초점은 검찰과 형사법연구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원장은 대부분 전직 검사 또는 형법학자들이 맡아 왔으며, 현재

41) 아시아경찰학회의 공식홈페이지 주소: www.aaps.or.kr.

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연구진이 형사법학자들이며 범죄학이나 경찰학분야 전문가는 상당히 부족하다. 또한 일부 관련학자도 국내에서 공부한 사회학박사들이며 해외에서 범죄학과 경찰학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국제 경찰의 치안경쟁력 평가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3절 국제치안경쟁력보고서 발표계획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각국의 치안경쟁력을 조사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가칭 세계 치안경쟁력보고서(WSCR)와 연례 발표회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발표해야 할 것이다.

1. 세계 치안경쟁력 보고서(World Security Competitiveness Reports)

먼저, 치안경쟁력 평가연구의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세계 치안경쟁력 보고서(WSCR)의 발표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연구요약, 연구의 의의, 연구방법, 연구결과를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정리하는 각종 특별 보고서도 별도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보고서는 책자로 제작해 일반에게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서 내용이 세계적으로 읽히도록 하려면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보고서는 한글판과 영어판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요 내용은 PDF파일형태로 가공하여 한글판과 영어판의 형태로 시행기관의 홈페이지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자들이나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보고서를 직접 읽기보다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요약본을 참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구보고서의 작성은 연구시행기관이 직접 담당해야 하고, 연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보고서의 작성에 한국 경찰청이나 한국 외교통상부가 간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2. 연례 발표회

치안경쟁력 평가연구의 내용을 관련 학자와 실무가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연례 발표회를 주최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실행기관은 경찰청의 후원을 받아, 연례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국의 치안행정성과 치안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사는 사실상 일부 학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경찰학회에서는 매년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맞도록 각 나라 경찰을 대표하는 학자 또는 경찰관이 자신 국가의 주요 치안행정 이슈와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공유하고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보고발표회에서는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연례 발표회의 시기는 보고서의 출간 후 일정시간이 흐른 후가 적당할 것이다. 통상 학자들이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최소 3-6개월 정도가 필요하므로 연례보고서를 발표한 후 6개월 이내에 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발표장소는 연구시행기관이 소재한 한국에서 시행하되, 구체적인 장소로는 언론의 접근성이 높은 경찰청이나 프레스센터 등에서 적절한 곳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연구주관기관에서는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시행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발표할 주제와 발표자 및 참가자 명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발표주제의 핵심은 그 해 발표된 보고서의 핵심이 내용이 되어야 한다. 즉 각국의 치안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비교평가와 추세분석을 기본으로, 그러한 현상의 정치, 사회, 문화적 원인 등을 분석하는 심화연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발표자와 참여자는 관련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학자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연구의 초기단계에는 연구의 공신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유명 학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Bayley, Moore, 그리고 Kelling 교수 등을 우선적으로 초청하여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 등에 대한 연설 등을 하도록 하여 연구에 대한 직·간접적인 추인을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발표자는 연구를 시행한 기관의 선임연구자가 연구의 핵심을 발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조사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세계 유명학자들이 자연스럽게 발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망있는 학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표자와 연설자들에게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한편, 우수 논문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발표회 시행기관은 발표회의 주제, 참가자 등을 미리 언론에 홍보하여 국내외적으로 결과가 널리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발표회의 참가자와 발표내용이 충실하면, 이에 대한 홍보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시행기관은 연구의 의의와 주요 연구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발표회를 실시할 때에는 유명학자들이 국내외 언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기자회견을 도와주는 작업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7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치안활동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지표, 즉 가칭 치안경쟁력 지표(Security Competitiveness Index or SCI)를 개발하고, 한국에서 매년 가칭 ‘세계 치안경쟁력보고서’ (World Security Competitiveness Reports)를 발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경찰기관에 대한 비교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기존에 국가간 치안경쟁력 지표로 사용되어온 경제연구소들의 지표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가간 치안경쟁력 지표로 사용가능성이 있는 공식범죄통계자료와 국제피해조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들의 치안경쟁력 지표로서의 사용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치안경쟁력 지표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조사방법, 그리고 발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치안경쟁력 지표는 안전과 보안증진, 공정한 법집행, 고객서비스, 그리고 경찰작용효율성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었다. 또한 이들 항목을 다시 범죄와 범죄피해감소, 두려움 감소 및 안전감 증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확보 (안전과 보안증진), 경찰력과 경찰권의 공정한 사용(공정한 법집행), 고객의 만족과 합법성 획득(고객서비스), 그리고 경찰력 대비 범죄대응능력(경찰작용 효율성) 등 6가지 세부항목으로 분류하고, 가중치 부여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6가지 세부항목을 측정하기 위한 14가지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들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유엔의 범죄조사자료, OECD의 교통사고 자료 등 제2차 자료와 세계 65개국의 외교관 약 6,500명을 대상으로 한 외교관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특히 외교관조사는 새롭게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표본의 설정과 조사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2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경찰학 실무와 연구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는 크게 (i) 한국의 치안경쟁력 재평가, (ii) 한국 경찰외교 발전, 그리고 (iii) 경찰경찰학연구 활성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 기존 국제경쟁력 평가가 치안경쟁력 평가로서 내재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새로운 경쟁력지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통해 한국의 치안역량이 제대로 평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경쟁력 결과가 발표되면서 각국 경찰의 장단점이 밝혀지면 결국 단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여 중국적으로는 경찰의 치안활동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매년 치안경쟁력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사회에 배포하는 일을 주도할 경우, 한국의 치안분야 외교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높은 경제수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차원의 외교활동이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발표대회에 참가하게 될 여러 나라의 경찰실무자들은 한국의 경찰학자와 경찰실무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한국경찰의 능력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례보고서의 작성과 배포는 범죄학 및 경찰학연구의 중요한 발전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학 분야의 자료는 경제학분야 등에 견주어 신뢰할 만한 제2차 자료가 매우 부족할 실정이다. 한국 경찰이 후원하여 새로운 치안경쟁력 평가 자료가 공개된다면 관련 학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학문적 융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경제정책비서관실, '07년도 IMD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보고, 2007.
- 권세혁·탁종연, 한국의 경찰통계 발전방안.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7.
- 김지선·김지영·홍영오·박미숙,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V).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김정호·김경석·정진규, AHP 기법을 활용한 지표간 중요도 도출.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2002-32, 2002년 12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1999.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사회지표를 활용한 국가경쟁력 개념연구, 2006.
- 윤재곤, "AHP 기법의 적용효과 및 한계점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지. 21(3), 1996.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2007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재정포럼 2007년 11월호: 91-96, 2007.
- 장준오, 2000. 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서울: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 정승민, "범죄두려움에서 지역특성과 경찰활동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사회연구. 2: 43-73, 2007.
- 조병인, "치안역량 인자별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6(2): 5-44, 2005.
- 조현승·김대욱, 국가경쟁력의 현주소와 강화방안. KIET 산업경제, 2005년 11월호: 3-12, 2005.
- 최인섭·김지선, 범죄의 두려움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7.
- 한국전산원, IMD 국가경쟁력지수 분석 및 시사점: 2001 -2005년 통합시계열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국제IT지수 분석연구시리즈 05-01, 2005.

〈외국문헌〉

- Babbie, Earl.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Belmont, CA: Wadsworth, 2001.
- Baumer, Terry. "Testing a General Model of Fear of Crime: Data from a

- National Sampl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2.(3):239-255, 1985.
- Bayley, David. H., “Measuring overall effectiveness or, police-force show and tell” *Quantifying Quality in Policing*. Edited by Larry Hoover. DC: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Pp:37-54, 1996.
- Ferraro, Kenneth.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New York: Suny Press, 1995.
- Ferraro, Kenneth and Randy Grange. “The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Sociological Inquiry*. 57(1):70-101, 1987.
- Frankfort-Nachmias, Chava and David Nachmias, *Research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6.
- Groves, Robert and Daniel Cork. *Surveying Victims: Options for Conducting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ational Academies Press, 2008.
- Henig, J. and M. Maxfield. “Reducing Fear of Crime: Strategies for Intervention.” *Victimology*. 3:297-313, 1978.
- Kelling, George L. “Defining the Bottom Line in Policing: Organizational Philosophy and Accountability.” *Quantifying Quality in Policing*. Edited by Larry Hoover. DC: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Pp:23-36, 1996.
- Krugman, P. R. “Competitiveness: A Dangerous Obsession.” *Foreign Affairs*. 73(2): 28-44, 1994.
- Mastrofski, Stephen D. “Measuring Police Performance in Public Encounters.” *Quantifying Quality in Policing*. Edited by Larry Hoover. DC: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Pp:207-241, 1996.
- Moore, Mark H. and Robert C. Trojanowicz. “Policing and the Fear of Crime.” *Perspectives on Policing*. 3.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8.
- Moore, Mark H. and Anthony A. Braga. “Police Performance Measurement: A Normative Framework” *Criminal Justice Ethics*, 23(1): 3-19, 2004.

- Moore, Mark H. and Anthony A. Braga. "Measuring and Improving Police Performance: the Lessons of Compstat and its progeny." *Policing*, 26(3): 439-453, 2003.
- Nieuwbeerta. P. *Crime Victim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sults from the International Crime Victims Survey, 1989-2000*. The Hague: Boom Legal Publishers, 2002.
- Pate, A.M., and W.G. Skogan. "Reducing the Signs of Crime: The Newark Experience." Technical report. Washington D.C.: Police Foundation, 1985.
- Porter, M. 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Free Press, 1990.
- Rubin, M.M., R. Culp, P. Mameli, and M. Walker. "Using Cross-National Studies to Illuminate the Crime Problem: One Less Data Source Left Standing."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4(1): 50-68, 2008.
- Sherman, L.W., P.R. Gartin, and M.E. Buerger. "Hot Spots of Predatory Crime: Routine Activities and the Criminology of Place." *Criminology*, 27: 27-55, 1989.
- Skogan, W.G. *Disorder and Decline: Crime and the Spiral of Decay in American Neighborhoods*. New York: Free Press, 1990.
- Weisel, Deborah. *Conducting Community Surveys: A practical Guide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and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1999.
- ICVS <http://rechten.uvt.nl/icvs/>

〈부록 1〉 IPS의 국가경쟁력 평가대상 국가의 명단

국가 그룹	대 상 국
강국 그룹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독일 중국 필리핀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브라질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파키스탄 터키 페루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이란 리비아
중국 그룹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대만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폴란드 칠레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오만 모로코 베네수엘라 케냐 스리랑카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소국 그룹	네덜란드 덴마크 홍콩 싱가포르 벨기에 스위스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헝가리 그리스 체코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크로아티아 과테말라

〈부록 2〉 제10차 유엔범죄조사설문지(경찰부분)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Questionnaire for the
Tenth United Nations Survey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covering the period 2005 - 2006**

I. Police

Country name: _____

Please complete this section of the questionnaire and return it to the **coordinating officer**, whose name is provided in the box below, no later than **15 December 2007**. The coordinating officer will, in turn, send all sections of the completed questionnaire to the Division of Policy Analysis and Public Affairs,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P.O. Box 500, A-1400, Vienna, Austria. E-mail cts@unodc.org.

Coordinating officer's name:		
Functional title:		
Agency:		
Street:		
City/state/country:		
Telephone (country code)	(city code)	(number)
Fax (country code)	(city code)	(number)
E-mail:		

Please kindly provide details about the responsible officer for the **police section** below:

Name of respondent (Police section):		
Functional title:		
Agency:		
Street:		
City/state/country:		
Telephone (country code)	(city code):	(number)
Fax (country code)	(city code):	(number)
E-mail:		

This section is part of a multi-section questionnaire, being distributed through the Permanent Missions to the United Nations. Copies are sent to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and to the Experts appointed as members of the Working Group on Statistic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the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The questionnaire can be filled in interactively (English only). Interactive forms of the questionnaire can be found at www.unodc.org/unodc/en/crime_survey_tenth.html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Table 1
Police personnel, by sex, and financial resources, 2005 - 2006

« Police personnel or law enforcement personnel » may be understood to mean personnel in public agencies whose principal functions are the prevention, detection and investigation of crime and the apprehension of alleged offenders. Data concerning support staff (secretaries, clerks, etc.) should be excluded from your replies.

		As at 31 December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some alternative reference day has to be used	1.b1 <input type="checkbox"/>
		If the box has been ticked, please indicate that day here	1.a1 <input type="text"/>
Category		2005	2006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police are part of the national security force in your country ¹	1.b2	<input type="checkbox"/>	1.b2 <input type="checkbox"/>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your country has more than one police force ²	1.b3	<input type="checkbox"/>	1.b3 <input type="checkbox"/>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police or law enforcement personnel fulfil prosecutorial functions	1.b4	<input type="checkbox"/>	1.b4 <input type="checkbox"/>
1.1 Total police personnel	1.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2 Total females	1.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3 Total males	1.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s there a specialised police body assigned to the policing of organized crime? If yes, please tick the small box	1.b5	<input type="checkbox"/>	1.b5 <input type="checkbox"/>
1.4 Please indicate number of police personnel assigned to the policing of organized crime	1.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Police budget/ financial resources

Total police budget/financial resources should include all monies allocated to the civil police function at the national level, including salaries and fixed assets. When calculating salaries, please include total monies spent on every individual employed in the given area. When calculating fixed assets, please include all monies invested in non-personnel assets, such as buildings, automobiles and office equipment. Please express amounts in millions of local currency units.

Total police budget/ financial resources	1.5	<input type="text"/>	1.5 <input type="text"/>
Currency used	1.12	<input type="text"/>	1.12 <input type="text"/>

Source(s) of the data provided in this table:

1.13

Comments Table 1

1.14

¹ If the police are part of the national security force in your country, please try to focus your replies as much as possible on the civil police rather than on the national guard or local militia.

² If there are many local forces, please provide data on those forces if possible.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Table 2

Crimes recorded in criminal (police) statistics and persons brought into initial formal contact with the police, by type of crime, 2005- 2006

For each type of crime, a definition is provided. Respondents may tick the relevant boxes if definitions are consistent with those used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Information on recorded crimes should be provided for the years 2005 and 2006 at the *national level* and from the *largest city* of the country. Furthermore, for each type of crime, respondents should provide the total number of *persons brought into initial formal contact with the police and/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ere initial formal contact might include being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Please indicate below the name and the population of the largest city data refer to:

		2005		2006
Largest City	2.t1	<input type="text"/>	2.t1	<input type="text"/>
Population	2.r1	<input type="text"/>	2.r1	<input type="text"/>

Please provide population data source here:

2.i2

Total recorded crimes

"Total recorded crimes" may be understood to mean the number of penal code offences or their equivalent (i.e. various special law offences), but excluding minor road traffic offences and other petty offences,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police or other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recorded by one of those agencies.

		2005		2006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b1	<input type="checkbox"/>	2.b1	<input type="checkbox"/>
2.0 Total recorded crimes at the national level ¹	2.0	<input type="text"/>	2.0	<input type="text"/>
2.1 Total recorded crimes in the largest city ¹	2.1	<input type="text"/>	2.1	<input type="text"/>
2.2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² regardless of the type of crime	2.2	<input type="text"/>	2.2	<input type="text"/>

Comments

2.i3

Intentional Homicide³

"Intentional homicide" may be understood to mean death deliberately inflicted on a person by another person, including infanticide.

		2005		2006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b2	<input type="checkbox"/>	2.b2	<input type="checkbox"/>
Intentional homicide, completed				
2.3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3	<input type="text"/>	2.3	<input type="text"/>
2.4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4	<input type="text"/>	2.4	<input type="text"/>
2.5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5	<input type="text"/>	2.5	<input type="text"/>

¹ Please note that the total number of recorded crimes may be greater than the sum of the numbers given for the individual types of crime listed in the following tables. The total should not include minor road traffic offences.

² Please note that the total number of persons brought into formal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may be greater than the sum of the numbers given for the individual types of crime listed in the following tables.

³ Please also fill in the "Supplementary information on statistics collected on homicide and other crimes leading to the death of another person" in the Annex to this questionnaire.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2005	2006
Intentional homicide, completed with a firearm		
2.6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6 <input type="text"/>	2.6 <input type="text"/>
2.7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7 <input type="text"/>	2.7 <input type="text"/>
2.8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8 <input type="text"/>	2.8 <input type="text"/>
Intentional homicide, attempted		
2.9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9 <input type="text"/>	2.9 <input type="text"/>
2.10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10 <input type="text"/>	2.10 <input type="text"/>
2.11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11 <input type="text"/>	2.11 <input type="text"/>
Intentional homicide, attempted with a firearm		
2.12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12 <input type="text"/>	2.12 <input type="text"/>
2.13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13 <input type="text"/>	2.13 <input type="text"/>
2.14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14 <input type="text"/>	2.14 <input type="text"/>

Comments

2.14

Non-intentional homicide¹

"Non-intentional homicide" may be understood to mean death not deliberately inflicted on a person by another person. That includes the crime of *manslaughter* (Common Law) but excludes traffic accidents that result in the death of persons.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005	2006
2.b3	<input type="checkbox"/>	2.b3 <input type="checkbox"/>
2.15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15 <input type="text"/>	2.15 <input type="text"/>
2.16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16 <input type="text"/>	2.16 <input type="text"/>
2.17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17 <input type="text"/>	2.17 <input type="text"/>

Comments

2.15

Assault

"Assault" may be understood to mean physical attack against the body of another person, including battery but excluding indecent assault.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005	2006
2.b4	<input type="checkbox"/>	2.b4 <input type="checkbox"/>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data on <i>assault</i> (2.18/2.19/2.20) <u>include threats</u> .	2.b5 <input type="checkbox"/>	2.b5 <input type="checkbox"/>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data on <i>assault</i> (2.18/2.19/2.20) <u>include slapping</u> .	2.b6 <input type="checkbox"/>	2.b6 <input type="checkbox"/>

¹ Please also fill in the "Supplementary information on statistics collected on homicide and other crimes leading to the death of another person" in the Annex to this questionnaire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2005

2006

and/or punching.

Total Assault including simple assault and aggravated assault/ major assault

2.18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18	<input type="text"/>	2.18	<input type="text"/>
2.19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19	<input type="text"/>	2.19	<input type="text"/>
2.20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20	<input type="text"/>	2.20	<input type="text"/>

Please indicate if a distinction between aggravated assault and simple assault, depending on the degree of resulting injury, was made in your country in 2005-06. If yes, please tick the relevant small box and provide the main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between aggravated assault and simple assault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b7	<input type="checkbox"/>	2.b7	<input type="checkbox"/>
------	--------------------------	------	--------------------------

Major Assault

2.21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21	<input type="text"/>	2.21	<input type="text"/>
2.22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22	<input type="text"/>	2.22	<input type="text"/>
2.23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23	<input type="text"/>	2.23	<input type="text"/>

Comments

2.16

Rape

“Rape” may be understood to mean sexual intercourse without valid consent.

2005

2006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b8	<input type="checkbox"/>	2.b8	<input type="checkbox"/>
Please indicate if a distinction between <u>sexual assault</u> and <u>actual penetration</u> was made in your country in 2005-06. If yes, please tick the relevant small box and provide information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b9	<input type="checkbox"/>	2.b9	<input type="checkbox"/>
Please indicate whether consensual sexual relations with a person who has not reached the statutory age of consent is <u>included</u> in the data provided (e.g. as statutory rape). If yes, please tick the relevant small box.	2.b10	<input type="checkbox"/>	2.b10	<input type="checkbox"/>
2.24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24	<input type="text"/>	2.24	<input type="text"/>
2.25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25	<input type="text"/>	2.25	<input type="text"/>
2.26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26	<input type="text"/>	2.26	<input type="text"/>

Comments

2.17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Robbery

"Robbery" may be understood to mean the theft of property from a person, overcoming resistance by force or threat of force. Where possible, the category "Robbery" should include muggings (bag-snatching) and theft with violence¹.

	2005		2006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b11	<input type="checkbox"/>	2.b11	<input type="checkbox"/>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data on robbery (2.27/2.28/2.29) include muggings (bag-snatching).	2.b12	<input type="checkbox"/>	2.b12	<input type="checkbox"/>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data on robbery (2.27/2.28/2.29) include theft with violence.	2.b13	<input type="checkbox"/>	2.b13	<input type="checkbox"/>
2.27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27		2.27	
2.28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28		2.28	
2.29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29		2.29	

Comments

2.18

Theft

"Theft" may be understood to mean the removal of property without the property owner's consent. The category "Theft" here excludes domestic burglary and housebreaking as well as theft of a motor vehicle/ automobile, which are recorded separately.

	2005		2006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b14	<input type="checkbox"/>	2.b14	<input type="checkbox"/>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data on theft include cases in which the property is returned.	2.b15	<input type="checkbox"/>	2.b15	<input type="checkbox"/>
Total theft including grand/ major theft and petty theft				
2.30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30		2.30	
2.31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31		2.31	
2.32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32		2.32	
Please indicate if a distinction between grand (major) and petty theft, depending on the value of the goods and property taken from their rightful owner, was made in your country in 2005-06. If yes, please tick the relevant small box and provide the main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between grand theft and petty theft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b16	<input type="checkbox"/>	2.b16	<input type="checkbox"/>
Major theft				
2.33 Total major theft	2.33		2.33	
2.34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34		2.34	
2.35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35		2.35	

Comments

2.19

¹ Definition consistent with that used in European Sourcebook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 www.europeansourcebook.org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Motor vehicle/automobile theft¹

"Automobile theft" may be understood to mean the removal of a motor vehicl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 of the vehicle.

	2005	2006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b17 <input type="checkbox"/>	2.b17 <input type="checkbox"/>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data on motor vehicle/automobile theft were <u>included</u> in <i>total theft</i> (2.30, 2.31, 2.32) in 2005-06.	2.b18 <input type="checkbox"/>	2.b18 <input type="checkbox"/>
2.36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36 <input type="text"/>	2.36 <input type="text"/>
2.37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37 <input type="text"/>	2.37 <input type="text"/>
2.38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38 <input type="text"/>	2.38 <input type="text"/>

Comments

2.t10

Housebreaking / Burglary

"Burglary" may be understood to mean to gain access to a closed part of a building or other premises by use of force with the intent to steal goods. Figures of burglary should, where possible, include theft from a factory, shop or office, from a military establishment, or by using false keys; they should exclude, however, theft from a car, from a container, from a vending machine, from a parking meter and from fenced meadow/compound.²

	2005	2006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2.b19 <input type="checkbox"/>	2.b19 <input type="checkbox"/>
If not, please tick relevant small boxes if data on Housebreaking/Burglary <u>include</u>:		
Theft from a factory, shop or office	2.b20 <input type="checkbox"/>	2.b20 <input type="checkbox"/>
Theft from a military establishment	2.b21 <input type="checkbox"/>	2.b21 <input type="checkbox"/>
Theft by using false keys	2.b22 <input type="checkbox"/>	2.b22 <input type="checkbox"/>
Theft from a car	2.b23 <input type="checkbox"/>	2.b23 <input type="checkbox"/>
Theft from a container	2.b24 <input type="checkbox"/>	2.b24 <input type="checkbox"/>
Theft from a vending machine	2.b25 <input type="checkbox"/>	2.b25 <input type="checkbox"/>
Theft from a parking meter	2.b26 <input type="checkbox"/>	2.b26 <input type="checkbox"/>
Theft from fenced meadow/compound	2.b27 <input type="checkbox"/>	2.b27 <input type="checkbox"/>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data on housebreaking / burglary were <u>included</u> in <i>total theft</i> (2.30/ 2.31/ 2.32) in 2005-06.	2.b28 <input type="checkbox"/>	2.b28 <input type="checkbox"/>
2.39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39 <input type="text"/>	2.39 <input type="text"/>
2.40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40 <input type="text"/>	2.40 <input type="text"/>
2.41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41 <input type="text"/>	2.41 <input type="text"/>

Comments

2.t11

¹ Please also fill in the "Supplementary information on statistics collected on thefts of motor vehicles" in the Annex to this questionnaire.

² Definition consistent with that used in European Sourcebook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 www.europeansourcebook.org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Economic fraud

"*Economic Fraud*" may be understood to mean the acquisition of another person's property by deception.

	2005		2006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b29	<input type="checkbox"/>	2.b29	<input type="checkbox"/>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fraudulent obtaining of financial property is <u>included</u> in the data provided for 2005-06.	2.b30	<input type="checkbox"/>	2.b30	<input type="checkbox"/>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data on economic fraud were <u>included</u> in <i>total theft</i> (2.30, 2.31, 2.32) in 2005-06.	2.b31	<input type="checkbox"/>	2.b31	<input type="checkbox"/>
2.42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42	<input type="text"/>	2.42	<input type="text"/>
2.43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43	<input type="text"/>	2.43	<input type="text"/>
2.44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44	<input type="text"/>	2.44	<input type="text"/>

Comments

2.i12

Embezzlement

"*Embezzlement*" may be understood to mean the wrongful appropriation of another person's property that is already in the possession of the person doing the appropriating, including offences established under Article 17,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¹.

	2005		2006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b32	<input type="checkbox"/>	2.b32	<input type="checkbox"/>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data on embezzlement (2.45/2.46/2.47) were <u>included</u> in <i>total theft</i> (2.30/ 2.31/ 2.32) in 2005-06.	2.b33	<input type="checkbox"/>	2.b33	<input type="checkbox"/>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data on embezzlement (2.45/2.46/2.47) were <u>included</u> in <i>economic fraud</i> (2.42/ 2.43/ 2.44) in 2005-06.	2.b34	<input type="checkbox"/>	2.b34	<input type="checkbox"/>
2.45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45	<input type="text"/>	2.45	<input type="text"/>
2.46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46	<input type="text"/>	2.46	<input type="text"/>
2.47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47	<input type="text"/>	2.47	<input type="text"/>

Comments

2.i13

Drug-related crimes

"*Drug-related crimes*" may be understood to mean intentional acts that involve the cultivation, production, manufacture, extraction, preparation, offering for sale, distribution, purchase, sale, delivery on any terms whatsoever, brokerage, dispatch, dispatch in transit, transport, importation, exportation and possession of internationally controlled drugs. Where applicable, reference may be made to the provisions of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of 1961² and other regulations adopted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¹ "Misappropriation or other diversion by a public official for his or her benefit or the benefit of another person or entity, of any property, public or private funds or securities or any other thing of value entrusted to the public official by virtue of his or her positio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8/4, Annex).

²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520, No. 7515.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the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of 1971¹ and/o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of 1988².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005	2006
2.b3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8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49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50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Comments

2.t14

Drug trafficking

“Drug trafficking” may be understood to mean drug offences, which are not in connection with personal use³.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005	2006
2.b36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b37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1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52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53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data on drug trafficking (2.51/2.52/2.53) were included in drug related crime(2.48/2.49/ 2.50) in 2005-06.

2.51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52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53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Comments

2.t15

Bribery and/or corruption

“Bribery and/or corruption” may be understood to mean requesting and/or accepting material or personal benefits, or the promise thereof,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a public function for an action that may or may not be a violation of law and/or promising as well as giving material or personal benefits to a public officer in exchange for a requested favour. Where appropriate, reference may be made to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⁴.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definition used in the space for comments at the end of the table.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in your country there is any law enforcement agency/body specialized in combating corruption⁵.

	2005	2006
2.b38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4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¹ Ibid., vol. 1019, No. 14956.

² Official Record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the Adoption of a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Vienna, 25 November–20 December 1988, vol. I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E.94.XI.5).

³ Definition consistent with that used in European Sourcebook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 www.europeansourcebook.org

⁴ Article 15,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8/4, Annex).

⁵ Article 36,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8/4, Annex).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2005	2006
2.55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55 <input type="text"/>	2.55 <input type="text"/>
2.56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56 <input type="text"/>	2.56 <input type="text"/>

Active bribery

The promise, offering or giving, to a public official, directly or indirectly, of an undue advantage, for the official himself or herself or another person or entity, in order that the official act or refrain from acting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official duties¹.

	2005	2006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b39 <input type="checkbox"/>	2.b39 <input type="checkbox"/>
2.57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57 <input type="text"/>	2.57 <input type="text"/>
2.58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58 <input type="text"/>	2.58 <input type="text"/>
2.59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59 <input type="text"/>	2.59 <input type="text"/>

Passive bribery

The solicitation or acceptance by a public official, directly or indirectly, of an undue advantage, for the official himself or herself or another person or entity, in order that the official act or refrain from acting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official duties².

	2005	2006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b40 <input type="checkbox"/>	2.b40 <input type="checkbox"/>
2.60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60 <input type="text"/>	2.60 <input type="text"/>
2.61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61 <input type="text"/>	2.61 <input type="text"/>
2.62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62 <input type="text"/>	2.62 <input type="text"/>

Comments

2.t16

Kidnapping

"Kidnapping" may be understood to mean unlawfully detaining a person or persons against their will (or national equivalent e.g. using force, threat, fraud or enticement) for the purpose of demanding for their liberation an illicit gain or any other economic gain or other material benefit, or in order to oblige someone to do or not to do something.

	2005	2006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b41 <input type="checkbox"/>	2.b41 <input type="checkbox"/>
2.63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63 <input type="text"/>	2.63 <input type="text"/>
2.64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64 <input type="text"/>	2.64 <input type="text"/>
2.65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65 <input type="text"/>	2.65 <input type="text"/>

Comments

2.t17

¹Article 15,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8/4, Annex).

²Article 15,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8/4, Annex).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Human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may be understood to mean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u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abuse of power or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giving or receiving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When applicable reference may be made to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¹.

		2005		2006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b42	<input type="checkbox"/>		2.b42 <input type="checkbox"/>
Please tick relevant small boxes if data on Human trafficking include:				
Sexual exploitation	2.b43	<input type="checkbox"/>		2.b43 <input type="checkbox"/>
Forced labour	2.b44	<input type="checkbox"/>		2.b44 <input type="checkbox"/>
2.66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66	<input type="text"/>		2.66 <input type="text"/>
2.67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67	<input type="text"/>		2.67 <input type="text"/>
2.68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68	<input type="text"/>		2.68 <input type="text"/>

Comments

2.i18

Smuggling of migrants

“Smuggling of migrants” may be understood to mean the procurement, in order to obtain, directly or indirectly, a financial or other material benefits of illegal entry into the country of a person who is not a national or a permanent resident. When applicable reference may be made to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².

		2005		2006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b45	<input type="checkbox"/>		2.b45 <input type="checkbox"/>
2.69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69	<input type="text"/>		2.69 <input type="text"/>
2.70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70	<input type="text"/>		2.70 <input type="text"/>
2.71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71	<input type="text"/>		2.71 <input type="text"/>

Comments

2.i19

¹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5/25, annexes I-III).

²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5/25, annexes I-III).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Counterfeit currency offences

"Counterfeit currency offences" can be understood to mean any violation in connection with manufacturing, issuing, uttering, smuggling or trafficking in counterfeit currency¹.

	2005	2006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b46 <input type="checkbox"/>	2.b46 <input type="checkbox"/>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data on Counterfeit currency offences were <u>included</u> in <i>economic fraud</i> (2.42/ 2.43/ 2.44) in 2005-06.	2.b47 <input type="checkbox"/>	2.b47 <input type="checkbox"/>
2.72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72 <input type="text"/>	2.72 <input type="text"/>
2.73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73 <input type="text"/>	2.73 <input type="text"/>
2.74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74 <input type="text"/>	2.74 <input type="text"/>

Comments

2.i20

Participation in organized criminal groups

"Participation in organized criminal groups" may be understood as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of an organized criminal group and/or organizing, directing, aiding, abetting, facilitating or counselling serious crimes involving organized criminal groups. This definition may apply to anyone who, being aware of the group's criminal objectives, becomes involved in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such objectives. When applicable, reference may be made to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²

	2005	2006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 definition above was applied in your country in 2005 – 2006. If a different definition was used, please specify in the space for comments below	2.b48 <input type="checkbox"/>	2.b48 <input type="checkbox"/>
2.75 Total recorded offences at the national level	2.75 <input type="text"/>	2.75 <input type="text"/>
2.76 Recorded offences in the largest city	2.76 <input type="text"/>	2.76 <input type="text"/>
2.77 Total persons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77 <input type="text"/>	2.77 <input type="text"/>

Comments

2.i21

Source(s) of the data provided in this table:

2.i22

¹ Definition consistent with that used by Interpol in the collection of international statistics.

²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5/25, annex I), Art.5.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Table 3

Persons brought into formal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egardless of the type of crime, by category and sex, age group and citizenship, where formal contact might include being suspected, arrested, cautioned, 2005- 2006

Please provide information for all categories as appropriate

	2005	2006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figures on persons brought into formal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efer to persons <i>suspected</i>	3.b1 <input type="checkbox"/>	3.b1 <input type="checkbox"/>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figures on persons brought into formal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efer to persons <i>arrested</i>	3.b2 <input type="checkbox"/>	3.b2 <input type="checkbox"/>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figures on persons brought into formal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efer to persons <i>cautioned</i>	3.b3 <input type="checkbox"/>	3.b3 <input type="checkbox"/>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figures on persons brought into formal contact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refer to <i>other categories</i> [Please specify below]	3.b4 <input type="checkbox"/>	3.b4 <input type="checkbox"/>
3.1 Total females (both adult and juvenile)	3.1 <input type="text"/>	3.1 <input type="text"/>
3.2 Total males (both adult and juvenile)	3.2 <input type="text"/>	3.2 <input type="text"/>
3.3 Total adults (both male and female)	3.3 <input type="text"/>	3.3 <input type="text"/>
3.4 Female adults	3.4 <input type="text"/>	3.4 <input type="text"/>
3.5 Male adults	3.5 <input type="text"/>	3.5 <input type="text"/>
3.6 Total Juveniles (both male and female)	3.6 <input type="text"/>	3.6 <input type="text"/>
3.7 Female juveniles	3.7 <input type="text"/>	3.7 <input type="text"/>
3.8 Male juveniles	3.8 <input type="text"/>	3.8 <input type="text"/>
3.9 Citizens of other countries	3.9 <input type="text"/>	3.9 <input type="text"/>

Source(s) of the data provided in this table: 3.a1

Please provide the definitions of "adult", "juvenile" and "citizen of other countries" that are used in the n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Adult: 3.a2

Juvenile: 3.a3

Citizen of other countries: 3.a4

Comments Table 3

3.a5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Table 4

Supplementary information on crimes recorded in criminal (police) statistics¹

Please tick all boxes that apply in your country

Questions	Answers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there are written rules regulating the way in which criminal (police) data are recorded 4.b1	<input type="checkbox"/>
When is the data collected for the inclusion in the statistics? <i>Please provide just one answer</i>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en the data collection takes place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s regards the police statistics, great difference exists depending on whether data are recorded when the offence is reported to the police (input) or at a later date, for example when the police have completed their investigation (output).	4.b2 1 <input type="radio"/> When the offence is reported to the police 4.b2 2 <input type="radio"/> After the report to the police, but before investigation 4.b2 3 <input type="radio"/> After investigation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a principal offence rule is applied It is essential to know the counting system used in cases of simultaneous offences. For example, how do statistics reflect the case of an offender who in the course of theft also causes damage to property? Where a principal offence rule is applied, the statistics will show one offence. Where there is no such rule, there will be a separate count for each offence	<input type="checkbox"/>
How are multiple offences counted? <i>Please provide just one answer</i>	4.b4 1 <input type="radio"/> As one offence 4.b4 2 <input type="radio"/> As two or more offences 4.b4 3 <input type="radio"/> Uncertain
How is an offence committed by more than one person counted? <i>Please provide just one answer</i>	4.b5 1 <input type="radio"/> As one offence 4.b5 2 <input type="radio"/> As two or more offences 4.b5 3 <input type="radio"/> Uncertain
Please tick the small box if data recording methods have been substantially modified during the reporting period 4.b6	<input type="checkbox"/>

Source(s) of the data provided in this table: 4.t1

Comments Table 4

4.t2

If, in your opinion, there are some additional explanations that might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ata that you have entered in this part of the questionnaire, please provide those explanations on an attached sheet.

¹ This table is consistent with Table 3.3.1.1 of the European Sourcebook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s – www.europeansourcebook.org

治安論叢 (제25집)

2009년 9월 발행

2009년 9월 인쇄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인쇄처 : (주) 대한피앤디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